



「'24~'28년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24년 사업별 시행계획」

복 지 국
[장애인복지과]



목 차



제1절 「'24~'28년 경기도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I. 추진배경	1
II. 연구 주요내용	2
III. 추진방향	4
IV. 비전 및 과제현황	6
V. 추진계획	7

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1-1. 장애인 일자리 확충	14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6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18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0
1-2.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	22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22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25
1-3.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27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27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29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1
1-3-4.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33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5
1-4.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37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37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2-1.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39
2-1-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41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3
2-1-3.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45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47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49
2-2. 장애인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람의 기회강화	51
2-2-1.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51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53
2-2-3.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55
2-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57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57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59
2-4. 경기도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62
2-4-1.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62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3-1.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66
3-2.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익옹호 체계강화	69
3-2-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	69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	71
3-2-3. 장애인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73
3-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	75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75
3-3-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77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79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4-1.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	81
4-1-1. 장애인 기회소득	83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86
4-2.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	88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설치	88
4-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90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92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94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96
4-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98
4-3.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100
4-3-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100
4-3-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102
4-3-3.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04

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5-1.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106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108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110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112
5-1-4.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114
5-2. 장애아동 및 고령장애인의 정책강화	116
5-2-1.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116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118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120
5-2-4. 고령장애인 쉼터	122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124
5-3. 여성/가족/소수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	126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26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28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130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132

⑥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6-1.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134
6-1-1.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136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	138
6-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140
6-2.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강화	142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142
6-2-2.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144
6-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146
6-2-4.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48
6-3.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통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	150

참고) 장애인등록 현황	153
---------------------------	------------

제2절 「'24~'28년 경기도장애인정책 기본계획」 '24년도 세부 시행계획

VI. 2024년 추진계획 157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1-1. 장애인 일자리 확충('24년)	167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24년)	167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24년)	169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24년)	171
1-2.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24년)	173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24년)	173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24년)	175
1-3.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24년)	177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24년)	177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24년)	179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24년)	181
1-3-4.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24년)	183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24년)	185
1-4.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24년)	187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24년)	187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2-1.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24년)	189
2-1-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24년)	189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4년)	191
2-1-3.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24년)	193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24년)	195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24년)	197
2-2. 장애인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람의 기회강화('24년)	199
2-2-1.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24년)	199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24년) ..	202
2-2-3.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24년) ..	204
2-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24년)	206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24년)	206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24년)	208
2-4. 경기도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24년)	211

3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3-1.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24년)	213
3-1-1·2.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24년)	213
3-1-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24년)	215
3-2.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익옹호 체계강화('24년)	217
3-2-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24년)	217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24년) ..	219
3-2-3. 장애인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24년)	221
3-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24년)	223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24년)	223
3-3-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24년)	225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24년)	227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4-1.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24년)	229
4-1-1. 장애인 기회소득('24년)	229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24년)	231

4-2.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233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설치('24년)	233
4-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24년)	235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24년)	237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24년)	239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24년)	241
4-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24년)	243
4-3.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24년)	245

5 장애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5-1.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24년)	248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24년)	248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24년)	250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24년)	252
5-1-4.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24년)	254
5-2. 장애아동 및 고령장애인의 정책강화('24년)	256
5-2-1.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24년)	256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24년)	258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24년)	260
5-2-4. 고령장애인 쉼터('24년)	262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24년)	264
5-3. 여성/가족/소수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24년)	266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24년)	266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24년)	268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24년)	270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24년)	272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6-1.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24년)	274
6-1-1. 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24년)	274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24년)	276
6-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확대('24년)	278
6-2.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강화('24년)	281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24년) ·	281
6-2-2.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24년)	283
6-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24년)	285
6-2-4.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24년)	287
6-3.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통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	289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4~'28)

I 추진배경

□ 수립근거

-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20.5월 제정)

제24조(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도지사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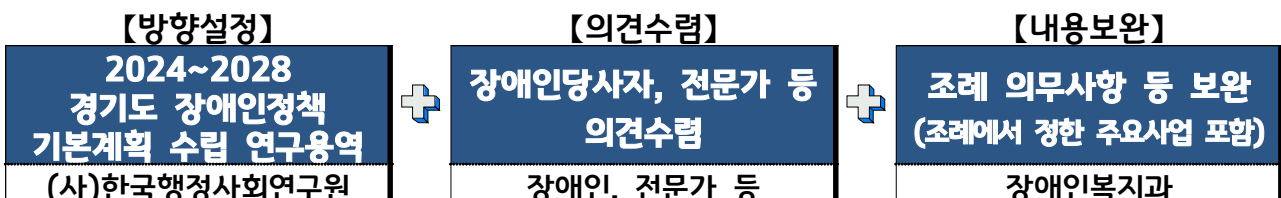
※ 제4차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21~'23)만료시점 도래에 따른 향후 5년 간 추진계획 수립

□ 장애인 정책 여건

- 중앙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및 민선8기 경기도 정책과 연계된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 도출 필요
- 최근 10년간 전국 등록장애인 수 대비 경기도 등록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장애인 인구 증가 : (’13년) 50만명 → (’23년) 59만명 / 경기도 인구의 4.3% 유지
 - ※ 전국 장애인 264만명 중 경기도는 22% 차지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증가 : (’13년) 19만명, 37.0% → (’23년) 29만명, 50.1%
- 소득, 의료, 주거, 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수요 외에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수요도 강하게 표출
 -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수요 : 소득보장(49.8%),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24~'28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기반마련

□ 추진경과

- 연구용역(의견수렴 포함)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의무사항 등 보완



II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주요내용(요약)

□ 연구용역 실시현황

- **경기도 장애인 인구현황 분석**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1~'23) 운영 평가**
 -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실·국 추진실적을 활용하여 운영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24~'28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경기도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진단, 욕구 및 실태 분석 실시**
 -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기도 raw data 활용
 -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경기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활용
 - 2022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누림센터 자료)
 -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현황조사(누림센터 자료)
 -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복지 실태조사(누림센터 자료)
 - 도내 장애종별 비율이 높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장애인 등 유형별 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
-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 분석, 중앙 및 타 시도 장애인복지 정책의 비교**
 - 중앙행정기관, 타 시·도 장애인 정책 분석 및 개발
 - 경기도 접목 가능한 정책 발굴
-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과제 등 기본계획('24~'28) 제시**
 - 지난 장애인정책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 '21 ~ '2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보완사항 도출
 - 중앙정부 기초, 민선8기 도정방향 및 장애인복지 현황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과제 등 기본계획 제시

○ 사례·문헌연구

- 중앙정부, 타 지자체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사례분석
- 국내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 사례 수집 분석
- 전국 장애인실태조사 및 경기도 실태조사 등의 자료 분석

○ 장애인 현황 및 특성 통계 분석

- 유형별 장애인단체(지체, 시각, 청각·언어 등)의 의견 수렴 및 욕구 분석
-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활용

○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회의 개최

- 장애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 정책적 제언

○ 공공인프라 강화

-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수가 14,620명으로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장애인수 7,536명 대비 1.94배 높음
- 장애인정책 인력을 증원하고, 부서간 업무협조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고령 장애인 지원근거 마련

-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 자문 및 장애인단체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장애인 정책 필요(발달장애인 40세 이상, 그 외 장애인은 50세 이상 시 치매 등), 정신건강 관련 자살·우울케어 바우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
- 중고령 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근거 마련 선행필요

○ 신규사업개발 필요성

- 장애인실태조사(경기지역) 통계에 따르면, 장애등록 이후 혜택체감 응답에 ‘받고 있다’가 26.5%로 전국 대비 2.3% 낮게 나타남. 특히 ‘청각, 장루·요루, 시각, 뇌병변,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국대비 2.6~9.5% 낮게 나타남
- ‘소득보장, 의료보장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장애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Ⅲ 추진방향

- **맞춤지원**(중앙 정책 방향)과 **기회제공**(도정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환경변화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

비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맞춤지원

-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반영>



기회

- 기회를 통해 장애인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 <민선8기 3대 비전 반영>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조례에서 정한 주요사업 보완 및 장애인정책을 망라한 **3대 비전, 6대 분야, 20개 과제 ⇒ 총 65개 세부사업 선정**

-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4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4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문화·체육 분야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3개 과제, 9개 세부사업)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 강화 · 인식 개선사업추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강화

-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3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창출 발판마련 및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지원
- 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3개 과제, 13개 세부사업)
 - 사회적약자 노인·아동·여성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⑤ 언제·언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3개 과제, 10개 세부사업)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및 야간·유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IV 비전 및 과제현황

비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정책 목표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⑥ 언제·언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중점 과제	① 장애인일자리 지원 (공약+기회)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기회) ③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공약+기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공약+기회) ⑥ 도비 장애수당 지급 (공약) ⑪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공약+기회)	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공약+기회) ⑥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⑧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기회)	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③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공약)	①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 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공약) ⑧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③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④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⑧ 고령장애인 심터 ⑨ 농아노인센터 운영	③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④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⑥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지원 ⑧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⑨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돌봄 지원 (공약+기회) ⑩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일반 과제	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⑦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⑧ 저소득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⑨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⑩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① 장애인경제선 지능인 평생 교육체계 구축 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④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⑦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장애인 생활밀착형) ⑨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회) ⑩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기회) ⑪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④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강화 ⑤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 ⑥ 장애인 이해 및 인식 개선 사업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⑧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⑨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②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③ 자립전환지원단 조직설치 ④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공약+기회) ⑦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공약+기회) 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⑪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②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⑤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⑥ 장애인종합자립센터 지원 ⑦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⑪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⑫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⑬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①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② 장애인 365쉼터 운영 ⑦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 센터 건립

V 추진계획

□ 세부사업 총괄

- 65개 세부사업 중 2023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12개의 사업이 신규로 포함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주택,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종증 장애인 전문 인력양성 및 맞춤형돌봄 지원, 최종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등

【세부사업 총괄표】

분야	과제	세부사업		
		계	신규	기존·확대
계	20	65	12	53
1.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4	11	3	8
2.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4	11	1	10
3.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3	9	1	8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3	11	1	10
5.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3	13	2	11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3	10	4	6

□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표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분야1.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1.1	장애인 일자리 확충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대상(명)	4,350	4,570	4,790	5,040	5,200	5,360	65,748	70,136	74,562	79,393	83,766	88,328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참여 장애인 근로자수(명)	25	25	25	25	25	25	250	250	250	250	250	250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참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수(명)	500	700	850	1,000	1,000	1,000	6,252	9,877	12,288	14,814	15,258	15,716
1.2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	1.2.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명)	1,552	1,533	1,620	1,660	1,660	1,660	2,979	2,943	3,110	3,187	3,187	3,187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명)	69	80	85	90	95	100	2,551	3,075	3,267	3,459	3,651	3,844
1.3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지급 대상자 수(명)	26,788	26,128	26,651	27,184	27,727	28,282	12,872	18,812	19,188	19,572	19,963	20,363
		1.3.2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급 대상자 수(명)	447	368	375	383	390	398	661	552	563	574	585	600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교부(명)	438	422	427	432	437	442	655	631	640	650	660	670
		1.3.4	장애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장애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호)	130	130	-	-	-	-	비예산	-	-	-	-	-
		1.3.5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사업 수혜가구(가구)	164	164	164	164	164	164	691.6	691.6	691.6	691.6	691.6	691.6
1.4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수(명)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수(명)	3,600	6,000	4,800	2,400	1,200	600	3,082	5,520	6,072	6,679	7,347	8,082
분야2.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2.1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2.1.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명)	100	150	150	150	150	150	52	52	52	52	52	52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참여자수(명)	5,700	6,500	6,500	6,500	6,500	6,500	3,149	3,149	3,149	3,149	3,149	3,149
		2.1.3	장애인평생 학습도시 지정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수(개소)	8	2	2	2	2	2	2,780	1,600	1,600	1,600	1,600	1,600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명)	2,400	3,000	3,000	3,500	3,500	4,000	1,195	1,195	1,990	1,990	1,990	1,990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팀)	40	50	55	60	65	70	100	200	220	240	260	280
2.2	장애인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람의 기회 강화	2.2.1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강화	생활체육교실, 클럽(개소수)	320	325	330	330	330	330	1,776	1,510	1,510	1,510	1,510	1,510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개소수(개소)	18	19	-	-	-	-	14,200	2,200	-	-	-	-
		2.2.3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	스포츠소외 계층 관람지원 수혜자(명)	3,000	3,500	4,000	4,500	5,000	5,000	776	576	576	576	576	576
2.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공모사업 수(개)	80	85	90	90	90	90	1,133	1,288	1,288	1,288	1,288	1,288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 수(개)	14	17	20	20	20	20	700	800	800	800	800	800
2.4	경기도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2.4.1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경기여행누리 이용자(명)	4,000	4,120	4,120	4,120	4,120	4,120	2,246	1,602	1,602	1,602	1,602	1,602
분야3.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3.1	특별교통 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3.1.1	특별교통 수단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대)	104	178	208	238	263	288	4,784	8,188	9,568	10,948	12,098	13,248
		3.1.2	특별교통 수단 운영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대)	1,205	1,242	1,274	1,306	1,331	1,356	127,093	153,061	170,199	178,704	187,639	197,021
		3.1.3	특별교통 수단광역 이동 통합 체계 구축	광역-시군 이동지원 시스템 연계 (개소)	20	25	31	31	31	31	1,777	5,190	9,000	9,000	9,000	9,000
3.2	장애인인권 침해 방지 및권익옹호 체계 강화	3.2.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강화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건수(건)	5,000	5,200	5,400	5,600	5,800	6,000	1,570	1,835	1,927	2,023	2,125	2,231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장애인일자리지원대상(명)	20	20	20	20	20	20	252	139	200	210	220	230
		3.2.3	장애의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 인식개선 교육(회수)	300	400	410	420	430	440	184	209	215	221	228	235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3.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현장조사요원 조사 활동 인원(명)	43	43	43	43	43	43	1,229	1,277	1,316	1,357	1,397	1,440
		3.3.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운영 확대	도 센터 운영 개소 수(개소)	1	1	1	1	1	1	453	498	499	500	502	504
				시군 센터 운영 개소 수(개소)	31	31	31	31	31	31	2,499	2,728	2,736	2,744	2,752	2,760
		3.3.3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수료인원(명)	2,268	2,268	2,268	2,268	2,268	2,268	190	190	190	190	190	190
분야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4.1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	4.1.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활동 성과 완수율(%)	70	70	70	70	70	70	2,3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단체)	23	23	23	23	23	23	5,998	7,619	8,390	9,229	10,151	11,166
4.2	자립의자기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정착지원	4.2.1	자립전환 지원단 조직 설치	전담인력 수(명)	4	5	7	7	7	7	305	321	400	400	400	400
		4.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	도내 센터 개소 수(개소)	58	60	62	62	62	62	12,663	13,305	13,305	13,305	13,305	13,305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체험홈 설치운영(호)	75	77	79	81	83	85	4,110	4,401	4,692	4,983	5,274	5,565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명)	20	23	25	30	33	35	420	460	500	600	630	700
		4.2.5	자립생활 주택 설치 운영 지원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호)	13	15	17	19	21	23	600	700	800	900	1,000	1,100
		4.2.6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주택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호)	미실시	50	100	150	200	250	-	2,000	4,000	4,800	6,000	7,200
4.3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4.3.1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 지원	추가지원 이용자수(명)	14,507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59,861	70,326	70,326	70,326	70,326	70,326
		4.3.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24시간지원 이용자수(명)	217	220	220	220	220	220	12,885	17,466	17,466	17,466	17,466	17,466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4.3.3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도우미) 운영	서비스 이용자 수(명)	300	310	320	330	340	350	3,632	3,633	3,633	3,633	3,633	3,633
분야5.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5.1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5.1.1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확대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운영(개소)	2	2	2	2	2	2	117	-	-	-	-	-
		5.1.2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운영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운영(개소)	2	2	2	2	2	2	898	878	896	914	932	950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 기관 운영 추진	경기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 (개소)	1	1	1	1	1	1	1,281	1,238	1,238	1,238	1,238	1,238
		5.1.4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가구 주택용소방시설 교체(보급)	-	500	500	500	500	500	0	30	30	30	30	30
장애인소방안전 교육(%)	5.8			6.0	6.2	6.4	6.6	6.8								
5.2	장애아동 및 고령 장애인의 정책 강화	5.2.1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지원 어린이집 수(개소)	21	114	114	114	114	114	-	1,216	1,216	1,216	1,216	1,216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 센터 지원	지원개소(개소)	32	29	29	29	29	29	1,266	1,159	1,193	1,230	1,267	1,304
		5.2.3	경기도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배치된 상담원(수)	31	32	32	32	32	32	1,626	1,718	1,760	1,804	1,848	1,894
		5.2.4	고령장애인 쉼터	고령장애인 쉼터운영(개소)	17	17	18	19	20	21	1,260	1,260	1,298	1,337	1,377	1,418
		5.2.5	농아노인 센터 운영	농아노인센터 이용자 수(명)	24,000	24,500	25,000	25,500	26,000	26,500	642	691	711	732	753	775
5.3	여성/가족/ 소수 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명)	200	200	200	200	200	200	255	265	265	265	265	265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개소)	2	2	2	2	2	2	205	230	237	244	251	258
		5.3.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지원(개소)	2	2	2	2	2	2	887	1,082	1,353	1,488	1,637	1,801
				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개소)	16	18	20	22	24	26	3,272	3,722	4,052	4,532	5,012	5,492

과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성과지표단위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소수장애인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간 내 용역완료율(%)	-	-	100	-	-	-	-	-	30	-	-	-
				소수장애인 대상자 지원율	-	-	-	60	70	80	-	-	-	1,000	1,300	1,600
분야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6.1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6.1.1	북부장래인 복지종합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개소)	1	1	1	1	1	1	436	450	475	500	525	550
		6.1.2	장애인365 쉼터 운영	쉼터 개소수(개소)	14	14	16	18	20	22	1,270	1,326	1,515	1,704	1,894	2,083
		6.1.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개소)	150	154	156	158	160	162	66,311	72,212	74,910	77,150	79,470	81,850
6.2	장애유형 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강화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지원대상자 (명)	5	10	20	30	40	50	388	531	531	550	550	550
		6.2.2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행동 지원사업	사업대상 (명)	32	32	40	48	48	48	1,152	1,152	2,880	3,456	3,456	3,456
		6.2.3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 지원	지원사업 대상 (명)	2,028	2,050	2,100	2,150	2,200	2,250	850	850	860	870	880	890
		6.2.4	뇌병변 장애인종합 지원센터 건립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개소)				1	1	1			30	900	400	400
6.3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6.3.1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개)	-	24	24	24	24	24	-	4,224	4,224	4,224	4,224	4,224
		6.3.2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지원	전문인력 수 (명)	-	350	350	350	350	350						
		6.3.3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원인원 (가구)	-	120	120	120	120	120						

□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 비전 및 정책 분야

- 추상적·선언적인 비전이 아닌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세부사업

- 기존의 많은 세부사업들의 나열을 지양하고, 경기도 장애인정책 현황 및 욕구에 맞는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중점 사업 중심으로 제시
- 특히, 경기도의 시그니처 사업 중심으로 국비보다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구성함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구분	‘21~’23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24~’28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구성체계	▪ 비전 ▪ 5대 정책목표 ▪ 48개 과제 ▪ 108개 세부사업	▪ 목표 ▪ 3대 비전 ▪ 6대 분야 ▪ 20개 과제 ▪ 65개 세부사업
비전	▪ (‘21~’22년 비전) 장애인을 포용하는 공정 사회 경기도 ▪ (‘23년 비전)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 (목표) 기회를 통해 장애인 삶의 변화를 선도 하는 경기도 - (3대 비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정책분야	1.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2. 사회참여 확대 3. 교육문화체육 확대 4. 사회적 돌봄 강화 5.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강화	1.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 되는 경기 2.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3.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경기 5.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6. 언제 어디서나 돌봄이 강한 경기
세부사업	▪ (‘21년)98개 → (‘22년)99개 → (‘23년)108개 ▪ 특징 : 국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세부사업을 구성 - 예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수당(기초) 지급,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등(국비 70%)	▪ 65개 ▪ 특징 : 경기도 시그니처 사업 중심으로 국비보다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구성 - 예시) 도비 장애수당(국비 0%, 도비 27%, 시군비 73%),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도비 100%)

VI 분야별 세부과제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실무 경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보장 필요
 - ※ 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8.2%) 전국(31.3%) 대비 3.1%↓ <출처: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발굴·지원·확대 필요
 - ※ 도내 등록장애인('23.12월, 586,421명)은 도내 인구(13,630,821명)의 4.3%로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최근 10년 동안 등록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점과제 (6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장애인 일자리 지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과
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장애유형별 직무 발굴 및 민간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지원과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 부여	장애인 자립지원과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지원과
5	도비 장애수당 지급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장애인 복지과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층 추락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과

□ 일반과제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등 5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639,479	112,487.6	120,631.6	129,269.6	135,358.6	141,731.6	
1	중점 과제	장애인 일자리 확충	소계	465,388	80,263	87,100	94,457	99,274	104,294	
			장애인 일자리 지원	396,185	70,136	74562	79393	83766	88328	
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1,250	250	250	250	250	250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67,953	9,877	12288	14814	15258	15716	
4	중점 과제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	소계	32,910	6,018	6,377	6,646	6,838	7,0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15,614	2,943	3110	3187	3187	3187		
5	일반 과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17,296	3,075	3267	3459	3651	3844	신규
6	중점 과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소계	107,481	20,687	21,083	21,488	21,900	22,325	
	도비 장애수당 지급		97,898	18,812	19188	19572	19963	20363		
7	일반 과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2,874	552	563	574	585	600	신규
8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251	631	640	650	660	670	신규
9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0	0	0	0	0	0	비예산
1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58	691.6	691.6	691.6	691.6	691.6	
11	중점 과제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소계	33,700	5,520	6,072	6,679	7,347	8,08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33,700	5,520	6072	6679	7347	8082		

1-1-1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1.1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윤진리	8008-6146

□ 배경 및 필요성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실무 경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보장 필요

※ 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8.2%) 전국(31.3%) 대비 3.1%↓ <출처: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 사업목적(비전)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대상) 도 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내용)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직접전일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 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 (일반형일자리) (전담인력)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자원요원, 직업재활시설자원요원(시간제에 한함)

* (복지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전용주차계도, 환경정비, 문서파기 등 직무 배치

○ (수행) 경기도 및 道 내 31개 시군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일자리 고용유지												
장애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배치기관 발굴추진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량(명)		4,350	4,570	4,790	5,040	5,200	5,36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5,748	70,136	74,562	79,393	83,766	88,328
		①국비	32,874	35,068	37,281	39,697	41,883	44,164
		②도비	4,931	5,260	5,592	5,954	6,282	6,625
		③시군	27,943	29,808	31,689	33,742	35,601	37,539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명)	연간 참여자 수 (실인원)	명	4,350	4,570	4,790	5,040	5,200	5,360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유지
- 장애인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 실현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김성겸	8008-5147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사회로의 진입, 장애인 채용기피 등으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 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8.2%) 전국(31.3%) 대비 3.1%↓ <출처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발굴·지원·확대 필요
 - ※ 도내 등록장애인('22.12월, 584,834명)은 도내 인구(13,589,432명)의 4.3%로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최근 10년 동안 등록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업목적(비전)

- 장애유형별 직무 발굴 및 민간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 부여로 장애인 자립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5조(취업알선 등)
- (대상) 도내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연간 사업기간) 매년 2월~12월(11개월)
- (사업량) 매년 5개소, 25명 지원
- (내용)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장애유형별 직무 발굴 및 민간취업 연계

○ (수행)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량(명)		25	25	25	25	25	25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50	250	250	250	250	250
		①국비						
		②도비	250	250	250	250	250	250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참여 장애인 근로자수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자 누계	명	25	25	25	25	25	25

□ 기대효과

-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촉진
-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김성겸	8008-5147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사회로의 진입, 장애인 채용기피 등으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 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8.2%) 전국(31.3%) 대비 3.1%↓ <출처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발굴·지원·확대 필요
 - ※ 도내 등록장애인('22.12월, 584,834명)은 도내 인구(13,589,432명)의 4.3%로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최근 10년 동안 등록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업목적(비전)

- 장애유형별 특화직무 발굴·수행을 통한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 부여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5조(취업알선 등)
- (대상) 도내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연간 사업기간) 매년 2월~12월(11개월)
- (사업량) '24(35개소, 700명), '25(43개소, 850명), '26(50개소, 1,000명) 지원
- (내용)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중증장애인 특화직무* 일자리 수행 *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 개선활동

○ (수행)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량(명)		500	700	850	1,000	1,000	1,00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252	9,877	12,288	14,814	15,258	15,716
		①국비						
		②도비	6,252	9,877	12,288	14,814	15,258	15,716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참여 장애인 근로자수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자 누계	명	500	700	850	1,000	1,000	1,000

□ 기대효과

-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 확대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2.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임현주	8008-5146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입은 시설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훈련수당’
평균 월71,380원에 불과, 장애인 당사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지속
- ※ 훈련장애인 월 평균 소요 비용 (교통비, 식비 등) ; 1인당 월 165,84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교통비·식비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1. 9. 8. ~ 10. 1.
- (조사대상)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56개소 / 이용장애인 4,031명
- (조사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교통비·식비 부담현황
 - 훈련장애인 월 평균 소요 비용 (교통비, 식비 등) ; 1인당 월 165,840원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6조의3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 (대상)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15세이상 훈련장애인
- (내용)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 (수행) 시군대행 (※ 자치단체 경상보조)

- 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② 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 시설 유형별 훈련 시간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준수
- ③ 월 훈련일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자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고양시의 경우 훈련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내용

-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수당 지원
* 훈련수당 50천원, 교통수당 50천원, 급식수당 60천원 포함
- 훈련일수에 따른 수당지급 방법

출석률	월 훈련일수*		일할계산 훈련단가
	15일 이상	15일 미만	
80% 이상 출석	전액지급	일할계산	1일 8,000원
80% 미만 출석	지급하지 않음		

* '훈련일수'란, 기관휴무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제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함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운영계획 및 매뉴얼 점검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추진 및 성과 점검						
사업비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량(명)	1,552	1,533	1,620	1,660	1,660	1,660
	합계 (①+②+③)	2,979	2,943	3,110	3,187	3,187	3,187
	예산액 (백만원)						
	①국비	-	-	-	-	-	-
	②도비	894	883	933	956	956	956
	③시군	2,085	2,060	2,177	2,231	2,231	2,231

※ '24년도 시군별 수요조사, '25-'26년 민선8기 공약패키지 근거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기회수당 지원(명)	기회수당 지원대상 수	명	1,552	1,533	1,620	1,660	1,660	1,660

※ '24년도 시군별 수요조사, '25-'26년 민선8기 공약패키지 근거

□ 기대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훈련이수를 제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향상 및 자립지원 강화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윤진리	031-8008-6146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환경이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자리참여를 위해서는 직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됨

※ 경기도 종별 전체 장애인 인구수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 10.3%(60,818명)

<’23.9월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자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 70.5%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출퇴근 훈련, 사업장 내 적응훈련 등의 과정을 보조·지원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6조(취업 후 적응지도)
- (대상) 道내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
- (내용)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장애인복지일자리) → 직무 적응과 경제적 자립 도모

- (수행) 29개 시군 수행 *부천시, 동두천시 미참여
- (계획) 직무지도원 파견 현황관리 및 4분기 인건비 지원('23.10월~)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자체/지원)	사업량(명)		69	80	85	90	95	10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551	3,075	3,267	3,459	3,651	3,844
		①국비						
		②도비	635	734	792	849	907	965
		③시군	1,916	2,341	2,475	2,610	2,744	2,879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이 직무지도원 파견(명)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수	명	69	80	85	90	95	100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이 직무지도원의 도움으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가복지팀	한윤정	8008-4323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소득보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나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는 10년간 동결

* (부가급여액) 18세 ~ 64세 : 2~8만원(10년간 동결)

- 2023년 정부 장애수당 지급액(4만원→6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도비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사업목적

- 장애인연금 외에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내용) 도비 장애수당 1인당 월 6만원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비 장애수당 6만원 지급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비 장애수당 지급	사업량(명)		26,788	26,128	26,651	27,184	27,727	28,28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872	18,812	19,188	19,572	19,963	20,363
		①국비	-	-	-	-	-	-
		②도비	3,381	4,962	5,046	5,147	5,250	5,355
		③시군	9,491	13,850	14,142	14,425	14,713	15,00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지급 대상자 수	정산보고서	명	26,788	26,128	26,651	27,184	27,727	28,282

□ 기대효과

- 경기도 자체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기여
-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 장애수당 지급으로 경기도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 선도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임지윤	8008-4359

□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사업목적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상)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내용) 입원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연 150만원 이내(1회 한정)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량(명)		447	368	375	383	390	398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61	552	563	574	585	600
		①국비	-	-	-	-	-	-
		②도비	150	144	147	150	153	159
		③시군	511	408	416	424	432	441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지급 대상자 수	정산보고서	명	447	368	375	383	390	398

□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비 등을 지원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3.3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김은지	8008-4318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지원 대상에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대상: 교부사업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38개 품목
- 국비 대상 품목 이외의 품목을 지원하여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확대 필요

□ 사업목적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상)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 국비 보조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 (내용) ① 건강보험법에 정한 품목 :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 ② 보조기기 품목분류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된 품목 : 1개 품목 연간 150만원 이내
- (수행) 31개 시·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수요조사, 자금교부, 신청,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시군 개수)		31	31	31	31	31	3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55	631	640	650	660	670
		①국비	-	-	-	-	-	-
		②도비	168	156	160	165	170	175
		③시군	487	475	480	485	490	495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보조기기 교부)명	보조기기 지원 명수	명	438	422	427	432	437	442

□ 기대효과

-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 복지 서비스 실현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에 긍정적 효과 상승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3.4	장애인 공공임대주택공급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정대교	8008-4932

□ 배경 및 필요성

- 탈시설 등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증가로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 주거지원 필요 장애인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사회·국가에 대한 경기도 장애인 요구사항 중 주거 안정 지원 요구 높은 비중 차지

□ 사업목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장애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GH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대상 ‘우선 공급’ 및 ‘1순위’ 공급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대상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급 및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 (행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공급 가능)
- (사업대상) 소득(월평균소득 70% 혹은 중위소득 100% 등) 기준 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추진현황) 道 내 장애인 대상 GH 공공임대주택 2,010호 공급('18.~'23년)

- ['18년] 281호 → ['19년] 507호 → ['20년] 510호 → ['21년] 218호 → ['22년] 189호 → ['23년] 305호

○ (추진계획) 장애인 대상 GH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30호 공급*('24년)

* '23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지표(130호) 적용하되, 수요에 따라 공급물량(300호 내외) 조정 가능

세부 추진 내용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및계약 등 공급 지속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 당해연도 단년도 계속 사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량		130호	-	-	-	-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비	예	산	
		①국비					
		②도비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공공임대 주택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 공급 현황	호	130	-	-	-	-

□ 기대효과

-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주거 안정 도모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최진영	8008-3226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 내 이동 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 사업목적(비전)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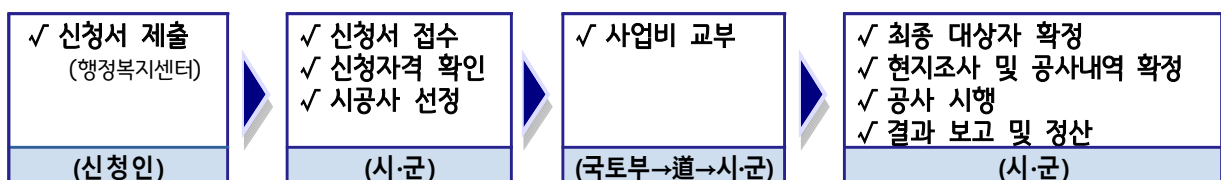
-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
- (내용)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출입문(손잡이, 문턱), 바닥, 욕실, 부엌 등 주거약자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개조

**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추진주체) 시·군

- (추진절차)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량		182호	182호	182호	182호	182호	182호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91.6	691.6	691.6	691.6	691.6	691.6
		①국비	345.8	345.8	345.8	345.8	345.8	345.8
		②도비	-	-	-	-	-	-
		③시군	345.8	345.8	345.8	345.8	345.8	345.8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 주거복지기금 100%) '24년 예산 0편성 * '22년까지 36호→'23년부터 182호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 수혜가구	호	164	164	164	164	164	164

※ 성과목표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량) 90%

□ 기대효과

-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1.4.1	장애인 누림통장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미애	8008-4325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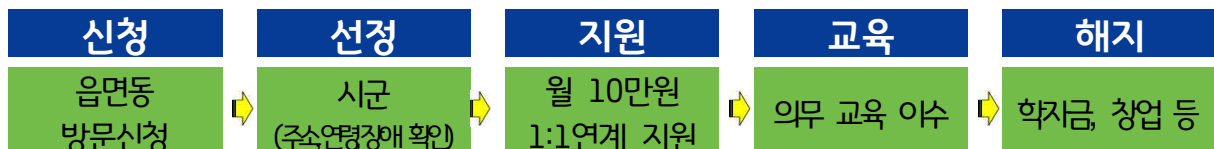
-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 및 고용률을 보임
- 대부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증장애인 소외

□ 사업목적

-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층 추락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량) 6,036명(신규 모집 2,400명, 기 가입자('22~'23년) 3,636명)
- (총사업비) 5,520,000천원(도 30%, 시군 70%)
- (수행기관) 시군 및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23세(연도말 기준)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년 모집예정자 : 2,400명('04년생 1,200명, '05년생 1,200명)
 - 추진절차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가입자 모집 및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량(명/누계)		3,600	6,036	6,600	7,260	7,980	8,77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028	5,520	6,072	6,679	7,347	8,082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908	1,656	1,822	2,004	2,204	2,425
		③시군	2,120	3,864	4,250	4,675	5,143	5,657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누림통장 가입자 수	누림통장 가입자	명	3,600	6,000	6,600	7,260	7,980	8,770

□ 기대효과

- 보편적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실질적 자리기반 마련

② 교육 · 문화 · 체육 · 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개 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4%)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28.3%)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성인 발달장애인은 모든 학령기 과정 이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은 실정으로, 학습 과정이 중단되고 가정 내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
-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활동은 재활 및 체력·건강관리, 운동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대인관계 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
- 스포츠 소외계층(노인, 장애인)의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통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정책 기반 조성

□ 중점과제 (3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장애인 자립지원과
2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체육진흥과
3	<u>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u>	<u>스포츠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스포츠 기본권 확대</u>	체육진흥과

□ 일반과제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 8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65,440	14,172	12,787	12,807	12,827	12,847	
1	중점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소계	34,360	6,196	7,011	7,031	7,051	7,07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260	52	52	52	52	52	
일반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5,745	3,149	3,149	3,149	3,149	3,149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신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9,155	1,195	1,990	1,990	1,990	1,990		
중점 과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1,200	200	220	240	260	280		
6	중점 과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람의 기회강화	소계	12,630	4,286	2,086	2,086	2,086	2,086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7,550	1,510	1,510	1,510	1,510	1,510	
일반 과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2,200	2,200	0	0	,0	0		
	중점 과제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2,880	576	576	576	576	576	
9	일반 과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소계	10,440	2,088	2,088	2,088	2,088	2,088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6,440	1,288	1,288	1,288	1,288	1,288	
10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4,000	800	800	800	800	800		
11	일반 과제	경기도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소계	8,010	1,602	1,602	1,602	1,602	1,602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8,010	1,602	1,602	1,602	1,602	1,602	

2-1-1

장애인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1.1	장애인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김순자	8008-4590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4%)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28.3%)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경계선 지능인은 경기도 인구의 7~14%(95~190만명)로 추정됨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 취약계층 평생교육 체계 구축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전파, 성과 공유

□ 사업개요

- (근 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장애인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등
- (방 법) 공기관 위탁(평생교육진흥원)
- (사업비) 52백만원(도비100%)
- (내 용)
 - 장애인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장애인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발표회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관계자 직무교육						
사례 발표회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사업량(명)		100	150	150	150	150	15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52	52	52	52	52	52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52	52	52	52	52	52
		③시군	0	0	0	0	0	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명)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	명	100	150	150	150	150	150

□ 기대효과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 우수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삶의 질 향상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김순자	8008-4590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평생교육 참여자와 장애인 인구가 증가 추세임에도 장애인 참여율(4%)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28.3%)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장애인의 일상·사회·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근 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대 상) 장애인, 관련 시설·기관·단체·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 (방 법) 시·군 보조사업
- (사업비) 3,149백만원(도비 945, 시군비 2,204)
- (내 용)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1개 시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4개 시군, 23개소, 평생교육사 43명)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량(명)		5,700	6,500	6,500	6,500	6,500	6,50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149	3,149	3,149	3,149	3,149	3,149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945	945	945	945	945	945
		③시군	2,204	2,204	2,204	2,204	2,204	2,204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참여자 수	명	5,700	6,500	6,500	6,500	6,500	6,500

□ 기대효과

-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2-1-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1.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김순자	8008-4590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교육 접근성 제고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근 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성인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시설 등
- (방 법) 국비 - 시군 보조사업
- (사업비) '24년 1,600백만원(국비 800, 시군비 800)
- (내 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 기반구축,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 성과 공유 등
 - 지정현황('23.10월 기준) : 16개 시군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사업량(조성수)		8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780	1,600	1,600	1,600	1,600	1,600
		①국비	1,390	800	800	800	800	800
		②도비	0	0	0	0	0	0
		③시군	1,390	800	800	800	800	80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개소)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수	교육부 공모 선정 시군수	개소	8	2	2	2	2	2

□ 기대효과

-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2-1-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김지윤	8008-5148

□ 배경 및 필요성

- 성인 발달장애인은 모든 학령기 과정 이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은 실정으로, 학습 과정이 중단되고 가정 내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사업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 (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 훈련, 직업 훈련, 문예체 활동, 정보화교육 등
 - 종합반, 단과반 등 교육과정 선택 가능
- (수행)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본사업 추진						

« 그간 추진경과 »

- '20. 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개정 → 평생교육 지원 조항 추가
- '21. 1. ~ 7. 시·군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구리, 시흥, 의정부)
- '21. 3. ~ '23. 1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사업량(개소)		3	3	5	5	7	7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195	1,195	1,990	1,990	1,990	1,990
		①국비	-	-	-	-	-	-
		②도비	359	359	597	597	597	597
		③시군	836	836	1,393	1,393	1,393	1,393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2,400	3,000	3,000	3,500	3,500	4,000

□ 기대효과

-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1.5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송지연	8008-5149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와 교류가 부족 등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지원(공적자원, 기관지원 등)이 필요
 - 프로그램 형식으로 국한되지 않고 자립준비, 취미활동, 권익옹호, 사교모임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자조모임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 욕구 등을 고려한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기여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대상) 경기도 거주 발달장애인
- (내용)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발굴육성, 자조모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육성 및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팀		40	50	55	60	65	7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00	200	220	240	260	280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100	200	220	240	260	280
		③시군	0	0	0	0	0	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팀)	자조모임 수	팀	40	50	55	60	65	70

□ 기대효과

- 자조모임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의 스스로 권리보호 및 자립을 실현

2-2-1**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2.1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최경필	8008-4703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생활체육 활동은 재활 및 체력관리, 건강관리, 운동 기능 증진, 자기실현, 대인관계 향상 등 잠재적 능력 발휘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에 대한 활력을 찾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경기도 장애인 욕구 및 실태분석 결과,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운동 및 체육이 ‘필요하다’가 63.1%, ‘매우 필요하다’가 22.6%로 재활운동 및 체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재활운동 및 체육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다’ 57.1%, ‘매우 필요하다’ 19.4%로 나타남
- 이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활 및 스포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사업목적(비전)

-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개인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능력보다는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주류화된 다양한 활동 필요
 - 개인의 체력과 체형을 파악하고 장애특성에 맞게 실시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신체외부장애는 재활중심, 발달 및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적 기능 증진을 위한 특수체육 및 재활체육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사업량(개소)		320	325	330	330	330	33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776	1,510	1,510	1,510	1,510	1,510
		①국비	0	0				
		②도비	1,776	1,510	1,510	1,510	1,510	1,510
		③시군	0	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생활체육지원 (개소수)	생활체육교실, 클럽(개소수)	개소	320	325	330	330	330	330

□ 기대효과

-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참여 기회 적극 제공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생활밀착형)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김늘빛	8008-4704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활동은 재활 및 체력·건강관리, 운동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대인관계 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찾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장애인들만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욕구에 기반한 전문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활 및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사업목적

- 장애인이 불편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

□ 사업개요

- 국민체육센터(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시·군 공모사업(국비 30~40억원 정액 보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생활밀착형)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생활밀착형) 건립 지원(기금/지원)	사업량(개소)		18	19	-	-	-	-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4,200	2,200	-	-	-	-
		①국비	14,200	2,200	-	-	-	-
		②도비	-	-	-	-	-	-
		③시군	-	-	-	-	-	-

※ 매년 예산액은 시·군 공모 신청, 문체부의 공모 심사 결과 및 계속사업 잔여예산에 따라 다름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수	개소	18	19	-	-	-	-

※ 매년 성과목표(사업량)은 시·군 공모 신청, 문체부의 공모 심사 결과 및 잔여 계속사업 수에 따라 다름

□ 기대효과

-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체육 향유 가능한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참여 기회 적극 제공

2-2-3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신규)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2.3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지원	중점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최경필	8008-4703

□ 배경 및 필요성

- 스포츠 소외계층(노인, 장애인)의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통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정책 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스포츠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스포츠 관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 스포츠 기본권 확대
 - 노인,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 도, 60세 이상 스포츠 관람 횟수(8.8회)는 전국 평균(11.2회) 이하(‘19 연량별 스포츠 관람(통계청경기도)>
- 도 내 노인, 장애인에 대해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노인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1인
- (내용) 프로스포츠 관람 입장권(75%)할인 지원
- (수행)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프로스포츠단 등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프로스포츠단 사회공헌 협약체결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사업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스포츠소외계층 관람기회확대 (자체/직접)	사업량(경기)	34	34	34	34	34
	예산액 (백만원)	776	576	576	576	576
	도비					

« 그간 추진경과 »

- 스포츠소외계층 관람권 지원 T/F 구성 : '22.12.14.
※ 구성 : 도(정책) + 도체육회 + 도장애인체육회
- 「도-프로스포츠단 참여, 기회, 나눔의 업무협약(전 구단 참여): '23.02.2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신설>: '22.12.08. / <변경> : '23.6.1.)
- 「장애인 체육관람 기회 확대 지원 방안 논의」 도의회 간담회: '23. 3. 17.
*기타 간담회 2회
-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3. 6. 1.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지원 수혜자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지원 수혜자	인원	3,000	3500	4000	4500	5,000	5,000

□ 기대효과

- 스포츠관람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예술정책과	예술인권익지원팀	김은혜	8008-4666

□ 배경 및 필요성

- 생활 문화시대를 맞아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이에 따른 장애문화예술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 욕구 및 실태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으로 예술 교육은 1.5%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됨
-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목적

-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및 예술활동 장려·지원으로 장애인예술창작 활성화,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1,288백만원(도비 386, 시군비 902) ※ 도:시군=3:7
- 사업근거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5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예술인 등

* ①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② 본 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사업추진 : 22개 시·군

*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이천,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 미참여 시군(9) : 고양, 파주, 김포, 광주, 안성, 의왕, 가평, 과천, 연천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참여 시·군 수	21	21	17	10	8
선정 사업수	88	71	60	34	29
사 업 비	1,133	884	733	400	334
도 비	340	265	220	120	100
시군비	793	619	513	280	234

○ 추진절차



- 사업내용 : ①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②장애인 문화예술 인력 역량 강화, ③장애인 문화예술발표 및 향유, ④장애인 예술창작 활동 지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군 자체 공모·선정 및 사업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자체/지원)	사업량(개)		80	85	90	90	90	9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133	1,288	1,288	1,288	1,288	1,288
		①국비	-	-	-	-	-	-
		②도비	340	386	386	386	386	386
		③시군	793	902	902	902	902	902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모사업 수(개)	수혜 장애예술단체 수(누계)	개	80	85	90	90	90	90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예술정책과	예술인권익지원팀	김은혜	8008-4666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예술인의 83.7%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됨
※ (참조)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 활동 예술분야는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순이며, 평균 활동 기간은 약 11년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 뇌병변장애인은 ‘문학과 연극’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지원(8.0%)’, ‘홍보/마케팅 지원(6.0%)’ 등의 순임
- 장애예술인의 7.6%만이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김

□ 사업목적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전문교육, 창작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800백만원(도비)
 - ※ '22. 신규(주민참여예산)12억 → '23년 이후 계속사업 편성
- 지원근거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방법 : 공기관위탁(경기문화재단)
- 사업내용 : 장애(예술)인 교육지원 및 활동지원
 - 기초-심화 단계별 전문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선정자(단체) 대상 역량강화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1:1멘토링 지원
- 지원규모 : 단체 24, 개인 25 내외 공모·선정 지원
 - ※ 개인(3백만원 정액), 단체(10백만원~40백만원 내외)

<공모 분야별 사업추진 개요>

구분	단 체		개인
	기초과정	심화과정	
총 지원예산	230백만원	340백만원	75백만원
지원규모	단체별 10~30백만원	단체별 20~40백만원	개인별 3백만원(정액)
선정규모	12건 내외	12건 내외	25명 내외
지원내용	교육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대여, 참가자 모집, 강사 인건비, 훈련사업비 등 지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예술인의 전문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24.3월 (道→문화재단)	⇒	단체 공모 '24.4월 공고 및 심사, 결과 발표 (문화재단)	⇒	컨설팅 '24.5월 프로그램 자문 (단체, 문화재단)	⇒	교육 및 창작활동 '24.5~12월 단체 활동 추진 (단체, 문화재단)	⇒	정산 '25.2월 (문화재단→道)
------------------------------	---	--	---	--	---	--	---	--------------------------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군 자체 공모·선정 및 사업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자체/지원)	사업량(개)		14	17	20	20	20	2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700	800	800	800	800	800
		①국비	-	-	-	-	-	-
		②도비	700	800	800	800	800	800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모사업수(개)	수혜 장애예술단체 수(누계)	개	14	17	20	20	20	20

□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 마련으로 실력있는 예술가 발굴·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2-4-1**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2.4.1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관광산업과	지역상생관광팀	백재연	8008-3326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민 10명 중 2~3명은 관광약자(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로 구성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인구 대비 관광약자 비율은 27.5%, 경기도는 23.3%(317만명)
- 2025년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관광약자의 증가에 따라 무장애관광 수요 증가 예상,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필요

□ 사업목적

- 관광배려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배려계층 관광향유권 보장 환경 구축을 통한 복지 증진 및 이용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근거)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대상) 관광배려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 (내용)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 (수행)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위탁/ 시·군 지원

○ (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무장애관광 활성화 및 정보제공)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경기여행누림)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량(명)		4,000명	4,120명	4,120명	4,120명	4,120명	4,120명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246	1,602	1,602	1,602	1,602	1,602
		①국비	-	-	-	-	-	-
		②도비	1,094	901	901	901	901	901
		③시군	1,152	701	701	701	701	701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여행누림 이용자(명)	경기여행누림차량 이용객(명)	명	4,000	4,120명	4,120명	4,120명	4,120명	4,120명

□ 기대효과

- 관광배려계층의 관광지에 대한 접근 이용, 이동 등 관광 활동 참여 증가
-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통해 관광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개 요

□ 배경 및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시·군별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침해 근절 필요
 - ※ 학대판정건수: '20년 173건 → '21년 220건 → '22년 231건
- 장애인당사자 인식개선강사 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특화직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마련

□ 중점과제 (3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확대 및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광역교통 정책과
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 일반과제

-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 등 6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1,018,071	173,314	195,850	205,897	216,151	226,859	
1	중점 과제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소계	981,864	166,439	188,767	198,652	208,737	219,269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54,050	8,188	9,568	10,948	12,098	13,248	
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886,624	153,061	170,199	178,704	187,639	197,021	
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41,190	5,190	9,000	9,000	9,000	9,000	공약
4	일반 과제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익옹호 체계강화	소계	12,248	2,183	2,342	2,454	2,573	2,696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	10,141	1,835	1927	2,023	2,125	2,231	
5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	999	139	200	210	220	230	신규
6			장애인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1,108	209	215	221	228	235	
7	일반 과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	소계	23,959	4,692	4,741	4,791	4,841	4,89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6,787	1,277	1316	1,357	1,397	1,440	
8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16,222	3,225	3235	3,244	3,254	3,264	
9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950	190	190	190	190	190	

3-1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1.1~ 3.1.3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광역교통 정책과	교통복지팀	신인식	8030-3732

□ 배경 및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시·군별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 사업목적

-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확대 및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07.19.)에 따라 통합·운영 방안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소요예산 : 166,439백만원(국비 13,961, 도비 49,768, 시군비 102,710)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표준안) 마련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 그간 추진경과 »

-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구축('23. 9월)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표준지침(안) 마련 및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23.10.4.)
- 특별교통수단 1,209대 (법정대수 849대 대비 142.4% 운영) ('23. 12월말 기준)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량(조성수)		104	178	208	238	263	288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4,784	8,188	9,568	10,948	12,098	13,248
		①국비	1,196	2,162	2,526	2,890	3,194	3,497
		②도비	1,402	2,199	2,574	2,945	3,254	3,564
		③시군	2,186	3,827	4,468	5,113	5,650	6,187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량(조성수)		1,205	1,242	1,274	1,306	1,331	1,356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7,093	153,061	170,199	178,704	187,639	197,021
		①국비	7,137	11,799	12,103	12,407	12,645	12,882
		②도비	33,269	42,379	47,429	49,889	52,498	55,242
		③시군	86,687	98,883	110,667	116,408	122,496	128,897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사업량(조성수)		20	25	31	31	31	3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777	5,190	9,000	9,000	9,000	9,000
		①국비						
		②도비	1,777	5,190	9,000	9,000	9,000	9,000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대	104	178	208	238	263	288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	대	1,205	1,242	1,274	1,306	1,331	1,356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광역·시군 이동지원 시스템 연계	개소	20	25	31	31	31	31

□ 기대효과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2.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주희연	8008-4336

□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 방임 등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 학대판정건수: '20년 173건 → '21년 220건 → '22년 231건
-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침해 근절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예방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대상) 도내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교육·홍보
- (수행)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남부1, 북부1)
- (인력) 총 25명(남부 14명, 북부 11명)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국비/직접), (자체/직접)	사업량(개소)		2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570	1,835	1,927	2,023	2,125	2,231
		①국비	209	258	271	284	299	314
		②도비	1,361	1,577	1,656	1,739	1,826	1,917
		③시군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건수(건)	장애인학대예방 지원실적 건수	건	5,000	5,200	5,400	5,600	5,800	6,000

□ 기대효과

- 장애인 차별, 학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적 피해회복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대발생 사전예방 및 인권침해 근절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이규효	8008-5151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인식개선

□ 사업목적(비전)

- 장애인당사자 인식개선강사 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특화직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마련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취업알선 등)
- (대상) 道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내용) 전문 이론 교육 및 현장훈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 (수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파견기관) 道내 유치원/초,중,고 및 공공기관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식개선 파견강의						
장애인일자리 수요기관 확대추진						

« 연도별 파견 실적 »

연도별	추진 실적		합계
	현장교육(파견강의)	공공기관('23년부터 추진)	
합 계	2,621	170	2,791
2020년	236	0	236
2021년	476	0	476
2022년	1,059	0	1,059
2023년(목표)	850	170	1,020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상 양성 및 파견 (자체/직접)	사업량(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52	139	200	210	220	230
	①국비						
	②도비	252	139	200	210	220	230
	③시군						

□ 성과목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명)	양성강사	명	20	20	20	20	20	20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유지

3-2-3

장애의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2.3	장애의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임지윤	8008-4359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경우,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기보다 보호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잘못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발생
 -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겪는 편견, 소외, 차별 등의 제도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

□ 사업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권리 주체로서 인식을 고취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대상 : 도민(시설 종사자, 초·중·고 학생, 지역주민 등), 공무원
- 사업내용
 - ‘장애발생이해 및 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추진
 - 도민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이론교육, 체험교육, 골든벨, 인형극, 연주단 등) 및 캠페인 활동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자체/직접)	장애 인식개선 교육 횟수		300회	400회	410회	420회	430회	440회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84	209	215	221	228	235
		①국비						
		②도비	184	209	215	221	228	235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 인식개선 교육(횟수)	장애 인식개선 교육(횟수)	횟수	300	400	410	420	430	440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
-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 공감 문화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등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해 제고

3-3-1**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대상시설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3.1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김은지	8008-4318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 필요
-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 유지·관리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인력은 법률적 편의시설 기준조사 수행으로 앱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조사가 곤란하여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하여 활용

□ 사업목적

- 장애인을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으로 채용,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 편의시설 자료 확보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
- (내용)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시설 현장 조사
 -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적합성 승인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정보조사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식당, 상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정보 조사 등

○ (수행) 31개 시·군

○ (인력) 장애인 43명

- 31개 시군 1명, 장애인 2만명 및 노인 6만명 이상 시군* 1명 추가 지원

*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자금 교부 및 편의시설 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자체/지원)	사업량(명)		43	43	43	43	43	43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29	1,277	1,316	1,357	1,397	1,440
		①국비	-	-	-	-	-	-
		②도비	369	383	395	407	419	432
		③시군	860	894	921	950	978	1,00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현장조사요원 조사 활동 인원	현장조사요원 조사 활동 인원	명	43	43	43	43	43	43

□ 기대효과

○ 법적 의무시설 외에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시설 조사를 통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

※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에 대한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편의정보 제공

○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지역 편의시설 자료 확보 및 장애인 알자리 창출 도모

3-3-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3.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도, 시군)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김은지	8008-4318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 도모
-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 유지·관리 필요

□ 사업목적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상담, 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 (대상)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 국비 보조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 (내용) 건축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 업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상담, 홍보·교육
- (수행)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 시·군 31개소)
- (인력) 센터 별 3인 이상(센터장, 선임요원, 일반요원)
 - ※ 일반요원 중 기술요원은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자자로 채용(보건복지부 운영 지침)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시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량(개소)		1	1	1	1	1	1
	도비 합계		1,203	1,316	1,319	1,323	1,327	1,33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453	498	499	500	502	504
		①국비	-	-	-	-	-	-
		②도비	453	498	499	500	502	504
		③시군	-	-	-	-	-	-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량(개소)		31	31	31	31	31	3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499	2,727	2,736	2,744	2,752	2,760
		①국비	-	-	-	-	-	-
		②도비	750	818	820	823	825	828
		③시군	1,749	1,909	1,916	1,921	1,927	1,932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 및 시·군 편의센터 운영	센터 운영 개소 수	개소	32	32	32	32	32	32

□ 기대효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과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	김수영	8008-2913

□ 배경 및 필요성

-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장애인)의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에 애로 사항 발생
- 장애인의 사회적 박탈감 및 소외감 발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약화 등

□ 사업목적

- 장애인 대상 집합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 강화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차별해소

□ 사업개요

-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직계가족
- (내용) 민간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
- (수행) 경기도 내 정보화 교육기관 9개소
- (목표) 매년 교육기관 당 252명, 9개 교육기관 2,268명 교육수료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국비/직접)	사업량		9개 교육기관 / 2,268명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90	190	190	190	190	190
		①국비	95	95	95	95	95	95
		②도비	95	95	95	95	95	95
		③시군	-	-	-	-	-	-

※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예산액 및 교육목표 변동 가능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정보화 교육 수료인원(명)	매년 모든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교육생의 수료인원	명	2,268	2,268	2,268	2,268	2,268	2,268

□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차별 해소로 인한 갈등 감소, 사회통합 효과 제고

4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경제, 건강, 사회활동 등 열악한 상황
 - 외출빈도는 낮고 우울·만성질환은 높아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 보호·육성 필요
- 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탈 시설 정책
기조로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확대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 중점과제 (3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장애인 기회소득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장애인 복지과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 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과
3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독립된 주거와 자립생활 유지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과

□ 일반과제

-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등 8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678,431	130,231	133,512	135,642	138,185	140,861	
1	중점 과제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	소계	96,555	17,619	18,390	19,229	20,151	21,166	
			장애인 기회소득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기회
2	일반 과제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46,555	7,619	8,390	9,229	10,151	11,166	
3	일반 과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소계	124,751	21,187	23,697	24,988	26,609	28,270	
			자립전환지원단 조직설치	1,921	321	400	400	400	4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66,525	13,305	13,305	13,305	13,305	13,30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24,915	4,401	4,692	4,983	5,274	5,565	공약/ 기회	
6	중점 과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890	460	500	600	630	700	공약
7	일반 과제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4,500	700	800	900	1,000	1,100	공약/ 기회
8	중점 과제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24,000	2,000	4,000	4,800	6000	7,200	신규
9	일반 과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소계	457,125	91,425	91,425	91,425	91,425	91,42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351,630	70,326	70,326	70,326	70,326	70,326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87,330		17,466	17,466	17,466	17,466	17,466		
11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18,165	3,633	3,633	3,633	3,633	3,633	

4-1-1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1.1	장애인 기회소득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심은희	8008-4486

□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경제, 건강, 사회활동 등 열악한 상황

- 외출빈도는 낮고 우울·만성질환은 높아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월평균 152천원
- (외출) 거의매일 외출 `20년 45.4% <<<< `17년 70.1%
- (우울감 경험) 장애인 18.2% >>> 전체인구 10.5%
- (만성질환) 고혈압 46.5%(비장애인 25.7%), 당뇨 22.0%(비장애인 10.7%) 비만율 43.9%(비장애인 38.3%)

○ 기존 장애인 복지제도는 사용처 제한 등 장애인의 주도적 선택 미흡

- (장애인연금 등)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목적
- (활동지원서비스) 평가지원점수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제공
- (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로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의 사회활동(건강 할 기회)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소득(자기주도예산)을 지원 장애인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창출 제도 필요

□ 사업목적

-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건강할 기회) 스마트 위치 활용, 스스로 가치활동(운동 등) 목표 수립(주 1회, 2시간 이상)
- (소득창출 기회) 목표한 가치활동 달성시 사회적보상(월 5만원, 6개월 30만원)

- (사회활동 기회) 기회소득 기반, 사회참여 활동 촉진(기회서비스 연계 등)
- (사업확대) 도민의 실 수요 반영하여 2차 지원 확대(1차 2천명 → 2차7천명)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 (대상)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23년 7천명 → '24년 1만명
 - ※ ['24.상반기] 7천명 월 5만원, ['24.하반기] 10천명 월 10만원*(사회보장변경협의 완료 후)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06.1천원(의료, 돌봄비용 등) *'20년 장애인실태조사 中

- ▶ 경기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22.12월) : 215,402명(전체 584,834명의 36.8%)
 - 만13세~64세 : 126,393명(전체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58.6%)
 - 정 책 대 상 : 기준중위 120% - 114,512명(126,393명의 90.6%)
 - *'21년 경기도사회보장조사: 장애인 4천가구 중 기준중위120%(4인가구 월6,491천원) 90.6% 적용
 - ▶ 소득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4인가구 건보료 월 231천원 수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기존 장애연금과 중복 가능

- (수행) 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공기관 대행
- (예산) ^(23년)23억(도비 100%) → ^(24년)100억(도비 100%)

« 추진경과 »

- 대상: 도내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7천명(기준중위 120% 이하) ※'22.12월 기준 11만명
- 경위: 모집('23.07.05.~07.14.) 9,817명(4.9:1), 1차선정('23.07.19.) 2,000명 지원완료
- 협약: 경기복지재단 ↔ 장애인체육회('23.08.25.)
 - 체력인증센터, 스포츠관람기회권 연계, 당사자 운동처방 등 기회소득 가치활동 지원
- 사회보장제도 변경 조건부 협의완료(<1차 신설> 3.27, <2차> 6.29., <3차>'23.10.19.)
 - 1년 시행 및 성과평가 후<'24.6.> 지속여부 판단(평가기간중 사업시행·예산·조례 변경불가)

○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기회소득 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						
성과평가 및 사업확대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직접)	사업량(명/누계)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3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①국비						
		②도비	2,3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수	활동 성과(완수율)	%	70	70	70	70	70	70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가치활동(건강유지, 사회활동) 촉진
 - 장애인 신체활동 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건강증진 콘텐츠 보급 등
-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 실험(장애인 자기주도 예산 사용)
 - 장애인 욕구 기반한 장애 유형별·활동별 필요 서비스 수요 발굴·활용
- 공급자 중심 기존 틀을 깨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정책 제시
 - 사회활동과 기회소득 사용의 최소 기준 제시로 수요자 중심 정책설계
-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 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형 자기주도예산제 실험
 - 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에 대응 경기도형 도입방안 선제적 추진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미애	8008-4325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 보호·육성 필요

□ 사업목적

-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로 단체 활성화

□ 사업개요

- 23개 단체의 ‘행사 및 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체
 - (행사 추진)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합창대회, 수어경연대회,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축제한마당 등
 -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단체 역량강화 사업,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량(개)		23	23	23	23	23	23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5,998	7,619	8,390	9,229	10,151	11,166
		①국비						
		②도비	5,998	7,619	8,390	9,229	10,151	11,166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지원단체 수	개	23	23	23	23	23	23

□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의 활동 수행 능력 제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 설치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 설치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조민희	8008-5144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탈 시설 정책 기조로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확대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 운영 및 기능을 수행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전환 및 개인별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여건 조성
 - 장애인자립욕구조사를 통한 자립전환상담 제공으로 지역사회 자립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로 장애인 자립 절차 도식화 및 표준매뉴얼 개발
- 자립관련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및 표준 매뉴얼 배포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0조(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구성운영)
- (대상) 자립전환지원단 역할 강화 및 조직 확대
- (내용) 정기적인 탈 시설 욕구조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 정기적인 전환서비스 상담, 자립지원 교육, 자립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자립정보 제공, 체험홈·자립생활주택·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공간 연계 운영,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전환지원조직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자체/직접)	사업량(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05	321	400	400	400	400
		①국비						
		②도비	305	321	400	400	400	400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개소)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전환지원단 조직 강화	전담인력 수	명	4	5	7	7	7	7

□ 기대효과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사람중심의 자립지원원칙과 실천방법을 제공하여 장애당사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보장

4-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조민희	8008-5144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유형별 FGI 조사 결과 자립생활 관련하여 탈시설 정책은 급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장애인이 자립을 원할 때 선택할수 있는 환경(지역 인프라등) 조성 선행과 장애인마다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 필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 고조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시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확대로 장애인 자립체계 지역별 구축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대상) 도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58개소
- (내용)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사회참여 활동지원
- (수행) 도내 30개 시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내 자립생활센터 개소 확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증액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지원 (자체/지원)	사업량(개소)		58개소	62개소	62개소	62개소	62개소	62개소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663	13,305	13,305	13,305	13,305	13,305
		①국비	386	394	394	394	394	394
		②도비	3,500	3,696	3,696	3,696	3,696	3,696
		③시군	8,777	9,215	9,215	9,215	9,215	9,215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개소)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내 자립생활센터 지원	도내 센터 개소 수	개소	58	60	62	62	62	62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마련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3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민현주	8008-5143

□ 배경 및 필요성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거 및 훈련 프로그램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6조(자립생활체험홈)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으로 자립역량 강화
 - 대중교통 이용하기, 은행이용, 시장보기, 금전관리, 이웃사귀기 등
- 운영기준
 -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입주기간) 2년(시·군 승인으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1채당 정원 2~3명, 1인 1실 제공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주택확보,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대상자 입주 및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호)		75	77	79	81	83	85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4,110	4,401	4,692	4,983	5,274	5,565
		①국비						
		②도비	1,233	1,321	1,409	1,497	1,585	1,673
		③시군	2,877	3,080	3,283	3,486	3,689	3,892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체험홈 설치운영 (호)	신규설치 및 운영(누계)	호	75	77	79	81	83	85

□ 기대효과

-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훈련 및 주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 도모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민현주	8008-5143

□ 사업목적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금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3조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 기간이 2년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 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절차 : 퇴소장애인 ⇒ 시설 소재지 시·군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 (연중)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명)		20	23	25	30	33	35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420	460	500	600	630	700
		①국비						
		②도비	126	138	150	180	198	210
		③시군	294	322	350	420	432	49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명)	정착금 지급	명	20	23	25	30	33	35

□ 기대효과

-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거비, 생활용품 마련비 등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 도모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민현주	8008-5143

□ 사업목적

-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제17조(자립생활주택)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 퇴소예정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지원
- 운영기준
 -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입주기간) 2년(자립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1채당 정원 2명, 1인 1실 제공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주택확보,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대상자 입주 및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호)		13	15	17	19	21	23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00	700	800	900	1,000	1,100
		①국비						
		②도비	240	280	320	360	400	440
		③시군	360	420	480	540	600	66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호)	신규설치 및 운영 (누계)	호	13	15	17	19	21	23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 도모

4-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2.6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주택	중점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민현주	8008-5143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자립 훈련 또는 단순 자립주거제공 방식의 지원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 돌봄이 결합된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지원주택) 사업 운영 체계 마련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독립된 주거와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임대주택과 자립생활 돌봄을 결합하여 제공
 - 공공임대주택 제공 :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자립생활 돌봄 제공 : 일자리, 자립·자활 교육, 의료, 취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제공으로 자립생활 유지 지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주택확보,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대상자 입주 및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호)		0 (24년 신규사업)	50	100	150	200	25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	2,000	4,000	4,800	6,000	7,200
		①국비	-	-	-	-	-	-
		②도비	-	600	1,200	1,800	2,400	3,000
		③시군	-	1,400	2,800	3,000	3,600	4,20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호)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누계)	호	0 (24년 신규사업)	50	100	150	200	250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착 도모

4-3-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3.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박선영	8008-4437

□ 배경 및 필요성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부족한 국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 자체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6세 ~ 64세까지, 모든 장애인 (소득무관) 중 국비급여 수급자
-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면제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업량(단위작성)		14,507	17,274	17,274	17,274	17,274	17,274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59,861	70,326	70,326	70,326	70,326	70,326
		①국비						
		②도비	14,681	17,106	17,106	17,106	17,106	17,106
		③시군	45,180	53,220	53,220	53,220	53,220	53,22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추가지원 이용자수	정산보고서	명	14,507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 기대효과

- 독거·취약가구 등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도모

4-3-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3.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박선영	8008-4437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화재나 호흡기 분리 등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4시간 돌봄 필요성 증가

□ 사업목적

- 타인의 도움 없이 생리현상 및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최종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 호흡기 착용 장애인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장애인
-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최대 330시간/월 지원
 - ※ 국비 급여+도추가+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월 최대 840시간까지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사업량(단위작성)		217	295	295	295	295	295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885	17,466	17,466	17,466	17,466	17,466
		①국비						
		②도비	3,865	5,238	5,238	5,238	5,238	5,238
		③시군	9,020	12,228	12,228	12,228	12,228	12,22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4시간 지원 이용자수	정산보고서	명	217	220	220	220	220	220

□ 기대효과

- 최종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돌봄 지원 강화

4-3-3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4.3.3	시군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박선영	8008-4437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가사, 외출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육아·산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돌봄 지원

□ 사업목적

-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도모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
- (지원내용)

구분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대상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시간	월 48시간 이내	월 160시간 이내	월 80시간 이내
이용기간	종료 시 까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	아동의 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까지
지원내용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등	육아 위생관리, 건강관리, 가사활동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사업량(단위작성)		401	389	389	389	389	389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632	3,633	3,633	3,633	3,633	3,633
		①국비						
		②도비	1,025	1,094	1,094	1,094	1,094	1,094
		③시군	2,607	2,539	2,539	2,539	2,539	2,539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서비스 이용자 수	정산보고서	명	401	389	389	389	389	389

□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5 장애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건강 격차 존재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수검률 약 10% 낮음, 유질환자 비율 약 2배 높음
- 도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타지역 유출 예방 및 거주지역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 공급필요
- 화재 시 장애인은 초기대응, 대피 등 한계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
-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종사자들은 장애아동돌봄서비스에 미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장애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중점과제 (4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대상 거주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보건의료과
2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화재 등 재난 시 초기대응 및 대피로 장애인 인명피해 저감 도모	생활안전 담당관
3	고령장애인 쉼터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을 통한 경기도 내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과
4	농아노인센터 운영	농아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문화체험 등 복지·재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복지과

□ 일반과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등 9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계	79,165	13,489	14,279	16,030	17,126	18,241	
1	일반 과제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소계	10,910	2,146	2,164	2,182	2,200	2,21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0	0	0	0	0	0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4,570	878	896	914	932	950	신규
3	중점 과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6,190	1,238	1,238	1,238	1,238	1,238	
4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150	30	30	30	30	30	
5	일반 과제	장애아동 및 고령장애인의 정책강화	소계	31,609	6,044	6,178	6,319	6,461	6,607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6,080	1,216	1,216	1,216	1,216	1,216	
6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6,153	1,159	1,193	1,230	1,267	1,304	
7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9,024	1,718	1,,760	1,804	1,848	1,894		
8	중점 과제		고령장애인 쉼터	6,690	1,260	1,298	1,337	1,377	1,418	
9			농아노인센터 운영	3,662	691	711	732	753	775	
10	일반 과제	여성/가족/소수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	소계	36,646	5,299	5,937	7,529	8,465	9,4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25	265	265	265	265	265	
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220	230	237	244	251	258	
1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30,171	4,804	5,405	6,020	6,649	7,293	
13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3,930	0	30	1,000	1,300	1,600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	김재완	8030-3263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건강 격차 존재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수검률 약 10% 낮음, 유질환자 비율 약 2배 높음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와 건강한 삶 도모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 (지정현황) 2개소 ※ 지정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 의료원(준비중)
 -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장애인 이용에 편리한 시설, 장애친화 건강검진장비를 구비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성 및 수검률 향상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량(개소)		2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17	-	-	-	-	-
		①국비	58.5	-	-	-	-	-
		②도비	58.5	-	-	-	-	-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개소)	개소	2	2	2	2	2	2

□ 기대효과

-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사업팀	홍정인	8008-4782

□ 배경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위해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이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함.

□ 사업개요

- (근거)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제2항, 제4항
-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자
- (내용) 고난이도의 장애인 치과진료 및 센터 진료비 지원
- (수행) 2개소
 -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 죽전치과병원). 2012.5월개소
 - 경기북부장래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2022.12월개소
- (계획)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 운영 및 지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권역장애인구강진료 센터 운영 (국비/직접)	사업량(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898	878	896	914	932	950
		①국비	449	439	448	457	466	475
		②도비	449	439	448	457	466	475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개소)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수	개소	2	2	2	2	2	2

□ 기대효과

-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1.3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	박예원	8008-4347

□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타지역 유출 예방 및 거주지역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 공급
- 민간제공이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 가족 의료수요 부응

□ 사업목적

-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대상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서비스 공급

□ 사업개요

- (사업명)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 (사업내용)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및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총사업비) 1,238백만원(국비 900(72%), 도비 338(28%))
- (추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지정기간) 2021년 ~ 2025년 ※ 최초지정(3년) 후 복지부 연장평가 및 재지정(2년)
- (심사방법) 보건복지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로 지자체 선정
- 세부추진내용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 원 운영 지원	사업량(단위작성)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	1,281	1,238	1,238	1,238	1,238	1,238
		①국비	922	900	900	900	900	900
		②도비	359	338	338	338	338	33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기도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공문	개소	1	1	1	1	1	1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 등 거주지역 내에서 장애아동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집중치료기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생애주기별 정기적 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저하 예방,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 예방

5-1-4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1.4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생활안전담당관	생활안전팀 안전교육팀	민예홍 이남형	231-0383 231-0362

□ 배경 및 필요성

- 화재 시 장애인은 초기대응, 대피 등 한계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
- 화재 등 재난 시 장애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함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인명피해) 수 : 장애인 18.0 > 비장애인 9.2
 -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시 사망률 : 장애인 39% > 비장애인 10%
 - 발생현황 : (장소)주거시설 70%, (연령)60대이상 65%, (유형)지적 > 뇌병변 > 지체
- ※ 최근 3년간 통계(2021년 ~ 2023년)

□ 사업목적

- 화재 등 재난 시 초기대응 및 대피로 장애인 인명피해 저감 도모
- 장애인 관련 시설 등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등 제외) 거주 신규 등록 장애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장애유형을 고려한 소화기·화재경보기 지원(청각장애인용 경보기 교체(보급))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추진
 - 장애인 전담강사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등 거점시설 연계한 적극적 교육대상 발굴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자체/직접)	사업량(단위작성)		-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0	30	30	30	30	30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0	30	30	30	30	30
		③시군	0	0	0	0	0	0

« 그간 추진경과 »

- 경기도 장애인 124,848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완료('23.10.31.기준)
- 소방학교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전문교육 등 수료(128명)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산하 훈련기관 등 장애인 교육 640회, 36,462명('23.10.31.기준)
- 장애인용 소방안전 표준교재 배포(지체·청각장애용 1,800부, 시각장애용 점자 150부)
- 장애인 복지관 화재대피 안전교육 지원물품 보급(39개소 / 117세트)

□ 성과목표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목표(달성율, 수급율등 성과측정 가능 지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1순위)청각장애인 가구 대비 산출, (2순위) 그 외 유형의 신규 장애인 등록자 보급	가구	-	500	500	500	500	500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	장애인인구수 대비 교육인원 산출 (매년 0.2% 상향)	%	5.8	6.0	6.2	6.4	6.6	6.8

□ 기대효과

- 주택화재 시 대피 및 초기 대응을 통한 장애인 인명피해 저감
-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 사고 대응능력 향상

5-2-1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2.1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김현정	8008-2573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집 영·유아는 감소 추세이나, 장애아는 3,269명으로 매년 증가함

※ '21년 2,866명(+275명 10.6%) → '22년 3,053명(+187명 6.5%) → '23년 3,269명(+216명 7.1%),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유아 수(명)	389,004	358,813	350,117	335,516	305,649
장애영유아 수(명)	2,420	2,591	2,866	3,053	3,269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3,269명)의 93.4%(3,113명)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이용중

○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간호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사업개요

○ 대상 : 장애아전문·통합 지정 어린이집(시장·군수 지정)

※ 전문 : 21개소, 통합 : 93개소

○ 내용 : 운전기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 운전기사 인건비 : (전문) 월 150만원

- 간호사 인건비 : (전문) 월 288만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전문) 연 400만원, (통합) 연 200만원

세부 추진 내용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	사업량(개소)		114	114	114	114	114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16	1,216	1,216	1,216	1,216
		①국비					
		②도비	349	349	349	349	349
		③시군	867	867	867	867	867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강화(개소)	지원 어린이집 수	개소	114	114	114	114	114

□ 기대효과

- 장애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

5-2-2**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	기존 작성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 돌봄과	아동돌봄팀	고홍훈	8008-4758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종사자들은 장애아동돌봄서비스에 미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장애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장애아동 지적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

□ 사업목적

- 지적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지원대상 : 지적장애아동 등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아동 전문인력 지원												
장애아동 프로그램비 지원												
기존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통합지역아동 센터 지원	사업량(개소)		32	29	29	29	29	29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66	1,159	1,193	1,230	1,267	1,304
		①국비	-	-	-	-	-	-
		②도비	376	311	320	330	340	350
		③시군	890	848	873	900	927	954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개소	32	29	29	29	29	29

□ 기대효과

- 장애전담교사가 지적장애아동의 지적수준에 맞게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공감력 향상, 정서적 교감,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최연주	8008-2598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 진행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사업목적

- (영유아) 장애위험 조기발견 및 지원연계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부모·보육교직원)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21.07.14. 시행)
- (대상) 도내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 (내용)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선별 및 치료연계, 보육교직원·부모 교육 및 상담
- (수행) 31개 시군 및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계획) 발달지연 상담 지속 추진 및 월별 실적보고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 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배치(자체/지원)	사업량(단위작성)		31명	32명	32명	32명	32명	32명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626	1,718	1,760	1,804	1,848	1,894
		①국비						
		②도비	813	859	880	902	924	947
		③시군	813	859	880	902	924	947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지원상담원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원(수)	명	31	32	32	32	32	32

□ 기대효과

- 장애위험 영유아와 일반영유아 간 보육간극 최소화 및 장애위험 영유아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애로사항 경감

5-2-4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2.4	고령장애인 쉼터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임지윤	8008-4359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증가
 - ('10년) 19만명, 33.5% → ('23년) 29만명, 50%
- 고령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의 문제와 노인 문제의 이중고로 인해 비장애노인에 비해 복지 욕구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사업목적

-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을 통한 경기도 내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
 - (근거)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 5. 19. 시행)
 - (내용) 고령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도내 60세 이상 장애인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자체/지원)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개소)		17	17	18	19	20	2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60	1,260	1,298	1,337	1,377	1,418
		①국비	-	-	-	-	-	-
		②도비	378	378	389	401	413	425
		③시군	882	882	909	936	964	993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개소)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개소)	개소	17	17	18	19	20	21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 (건강증진) 고령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부합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차 장애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 (사회참여) 연령과 장애의 공통성을 공유하는 동료와 함께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예방
- (사례관리)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사례관리, 보호받을 권리 보장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이상헌	8008-4485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와 노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아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사업목적

- 농아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문화체험, 한글교실 등 복지·재활·교육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정서적 문제해결을 도모

□ 사업개요

- 농아노인센터 운영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내용) 농아노인들이 필요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도내 60세 이상 농아노인
 - (사업량)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센터운영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농아노인센터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농아노인센터 운영 (자체/직접)	농아노인센터 운영(개소)		2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42	691	711	732	753	775
		①국비	-	-	-	-	-	-
		②도비	642	691	711	732	753	775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농아노인센터 이용자수(명)	농아노인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명	24,000	24,500	25,000	25,500	26,000	26,500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60세 이상 농아노인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정서적 안정감 도모 및 사회참여 활동 독려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임지윤	8008-4359

□ 배경 및 필요성

-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대상) 도내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내용)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지원)	사업량(명)		200	200	200	200	200	20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55	265	265	265	265	265
		①국비	179	186	186	186	186	186
		②도비	11	12	12	12	12	12
		③시군	65	67	67	67	67	67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명)	명	200	200	200	200	200	200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여성장애인의 출산 부담 완화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임지윤	8008-4359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는 경제적 자립 어려움(22.5%), 이종차별(15.2%), 사회화 기회의 부족(11.1%)으로 나타남.

※ '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대상) 도내 여성장애인
 - (내용) 여성장애인 상담, 역량강화 교육,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제공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국비/직접)	사업량(개소)		2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205	230	237	244	251	258
		①국비	144	147	166	171	176	181
		②도비	61	83	71	73	75	77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개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개소)	개소	2	2	2	2	2	2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지식 습득 및 사회 복귀 기회 제공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유성범	8008-4335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 저하로 인해 가족 갈등 등 문제 발생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촉진
 -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장애인 및 가족
- 사업량('24년): 20개소 (도 2, 시군 18)
 - ※ 시군센터 지원 및 설치 독려로 전 시군 설치 시까지 매년 늘려나갈 예정
- 사업내용: 장애인가족 상담, 가족 기능강화, 인식개선, 휴식지원 등
- 예산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센터 1명당 월 5만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남부 1, 북부 1)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18개소→26개소)						

○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자체/직접)	사업량(개소)		2	2	2	2	2	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887	1,082	1,353	1,488	1,637	1,801
		①국비						
		②도비	887	1,082	1,353	1,488	1,637	1,801
		③시군						
시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개소)		16	18	20	22	24	26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272	3,722	4,052	4,532	5,012	5,492
		①국비						
		②도비	910	1,063	1,216	1,360	1,504	1,648
		③시군	2,362	2,659	2,836	3,172	3,508	3,844

※ [도] '25년 25% 증액(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등 반영),
'26년~'28년 매년 10% 증액(인건비 호봉인상, 물가인상 등 반영)

[시군] '25년부터 상근인력 1인당 60백만원으로 증액(기존 55백만원), 신규센터 4명 기준 반영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가족지원 센터 지원(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적 확충 수	개소	18	20	22	24	26	28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
- 장애인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가족의 권익 보호
- 장애인가족의 복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조재형	8008-4364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유형 중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 유형에 대한 복지정책 집중으로 소수 장애 유형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근거

-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수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소수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시·청각 중복장애 등 소수장애인
- 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소수장애인 72,073명('23.09월 기준)
- 사업내용 : 소수장애 유형별 단체 의견수렴 후 연구용역 실시결과 반영
신규사업 연차별 사업추진
- 예산지원: 연구용역비, 소수장애인 지원 신규사업(물품지원, 사업운영비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수장애인 유형별 복지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 결과반영 소수장애인 유형별 지원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수장애인 유형별 복지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체/직접)	사업량(식)		-	-	1	-	-	-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	-	30	-	-	-
		①국비		-	-	-	-	-
		②도비	-	-	30	-	-	-
		③시군	-	-	-	-	-	-
소수장애인 유형별 지원사업 (자체/지원)	사업량(사업수)		-	-	-	1	2	3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	-	-	1,000	1,300	1,600
		①국비	-	-	-	-	-	-
		②도비	-	-	-	300	390	480
		③시군	-	-	-	700	910	1,12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구용역 추진달성율	소수장애인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간 내 용역완료율(%)	%	-	-	100	-	-	-
소수장애인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율	총 소수장애인 사업대상자 대비 실제 자원자 비율(%)	%	-	-	-	60	70	80

□ 기대효과

- 소수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감소
- 소수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확대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필요
-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 장애당사자에게는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필요
-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 대두
-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장애인은 도전적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인력 필요

□ 중점과제 (6개 세부사업)

연번	중점과제	추진목표	소관부서
1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복지과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지원	장애인 자립지원과
3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도전적 행동 분석, 맞춤형 개별 계획 등 개인별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유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4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장애인 복지과
5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과
6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지원	최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제공	장애인 자립지원과
7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최중증 장애로 복지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장애가족 돌봄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과

□ 일반과제

- 「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 3개 세부사업

□ 연차별 예산('24~'28)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440,926	80,745	85,425	89,354	91,399	94,003	
1	일반 과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소계	396,614	73,988	76,900	79,354	81,889	84,483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2,500	450	475	500	525	550	
2			장애인 365쉼터 운영	8,522	1,326	1515	1704	1894	2083	
3	중점 과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385,592	72,212	74910	77150	79470	81850	
4	중점 과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강화	소계	23,192	2,533	4,301	5,776	5,286	5,296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2,712	531	531	550	550	550	
5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14,400	1,152	2880	3456	3456	3456	공약/ 기회
6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4,350	850	860	870	880	890	
7	일반 과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730	0	30	900	400	400	신규
9	중점 과제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통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소계	21,120	4,224	4,224	4,224	4,224	4,224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21,120	4,224	4,224	4,224	4,224	4,224	신규
10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돌봄 지원							
11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6-1-1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1.1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미애	8008-4325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경기 남북부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 누림센터 운영

□ 사업(건립)개요

- (사업기간) '17. 5월 ~ '23. 6월(예정)
- (사업위치) 양주시 삼송동 640-18번지 일원
- (사업규모) 부지 3,300㎡, 연면적 6,520㎡(자하1, 자상3)
- (입주시설) 이전설치 4, 기타 5(참고)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보조기기북부센터 /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경기북부점자도서관, 식생활 체험관 등

- (총사업비) 201억원(공사 167, 토지 9, 설계 6, 감리 19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량(개소)		1	1	1	1	1	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436	450	475	500	525	550
		①국비	0	0	0	0	0	0
		②도비	436	450	475	500	525	550
		③시군	0	0	0	0	0	0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북부누림 센터 운영	개소	1	1	1	1	1	1

□ 기대효과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서비스 효율적 제공 및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등 광역 허브 기능 수행을 통한 장애인 권익 증진

6-1-2**장애인 365쉼터 운영**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	일반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박현규	8008-2431

□ 배경 및 필요성

- 긴급 보호(경조사, 입원 등)가 필요한 도내 중증장애인의 일시보호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장애인 365쉼터 지정, 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설 및 가정 내 폭력, 유기 등과 같이 장애인에게 안전한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의 격리 혹은 치료를 위해서도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도내 중증장애인 증가 및 보호자의 긴급 상황 필요에 따른 장애인 365쉼터 운영이 요구됨

□ 사업목적

- 보호자의 긴급 상황을 지원하는 365쉼터 운영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대상) 긴급보호가 필요한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
- (내용)
 - 장애인 365쉼터 수요파악 신청 시·군(시·군비 부담) 우선 지정 확대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인건비(장애인 4명당 인력 2명 지원) 및 운영비 지원
- (계획)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자체/지원)	사업량(개소)		14	14	16	18	20	2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270	1,326	1,515	1,704	1,894	2,083
		①국비	-	-	-	-	-	-
		②도비	381	398	455	511	568	625
		③시군	889	928	1,060	1,193	1,326	1,45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개소)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개소수	장애인 365쉼터 운영 시설 개소수	개소	14	14	16	18	20	22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 재가 중증장애인 긴급 일시보호 체계 강화

6.1.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1.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확대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권구현	8008-4466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주간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 장애당사자에게는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적법하게 설치·신고된 주간이용시설 및 기존 시설운영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이용 시설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 사업내용 :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 활동 등 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사업량(단위작성)		150	154	156	158	160	16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66,311	72,212	74,910	77,150	79,470	81,850
		①국비						
		②도비	6,632	7,272	7,491	7,715	7,947	8,185
		③시군	59,679	64,940	67,419	69,435	71,523	73,665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신규 설치수	개소	150	154	156	158	160	162

□ 기대효과

- 재가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재활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확충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이정은	8008-6148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최대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 지원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정과 유사한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기반의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유지

□ 사업개요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및 제29조의3 제26조(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내용)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상황 발생 시 가정과 유사한 주택에서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 제공
 - (낮 활동 지원) 일상생활, 내부활동 등의 사회참여 지원
 - (주거생활 지원) 식사 및 야간돌봄 제공

○ (수행)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추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본사업 추진						

« 그간 추진경과 »

- '23. 7.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의정부)
- '23. 7. ~ '24. 1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사업량(개소)		1	1	1	1	1	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388	531	531	550	550	550
		①국비	272	372	372	385	385	385
		②도비	116	159	159	165	165	165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자 수	명	5	10	20	30	40	50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최대7일) 가정과 유사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6-2-2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2.2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중점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김지윤	8008-5148

□ 배경 및 필요성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이 힘들고, 전적으로 가족이 장애 당사자를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 도전적 행동: 자해, 타해 등으로 당사자 또는 주변인의 신체적 안전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

□ 사업목적

- 도전적 행동 분석, 맞춤형 개별 계획 등 개인별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 긍정적 행동 지원: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별 문제를 분석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변화 시킴

□ 사업개요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대상)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내용)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프로그램
 - 일상 생활 기본활동 지원,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등
 - 10:00~16:00 일 6시간, 개소 당 이용자 4명

○ (수행) 시·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수행기관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 교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사업량(개소)		8	8	10	12	12	12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1,152	1,152	2,880	3,456	3,456	3,456
		①국비	-	-	-	-	-	-
		②도비	576	576	1,440	1,728	1,728	1,728
		③시군	576	576	1,440	1,728	1,728	1,728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대상(명)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이용자 인원	명	32	32	40	48	48	48

□ 기대효과

- 도전적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 및 일상생활 영역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자기주도적 삶 영위

6-2-3

뇌변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2.3	뇌변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중점	기존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양정현	8008-4329

□ 배경 및 필요성

- 뇌변변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미비로 뇌변변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어 일반 장애인복지서비스 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 사업목적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심한 뇌변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뇌변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사업)
- (대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해야 하는 심한 뇌변변장애인
 - ※ 만 2세이상(25개월) ~ 만 64세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배변·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 (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내 / 분기별 지원)
 - 지원방법 : 구입 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액 개인별 계좌 지급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 영수증 제출 → 계좌 입금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량(명)		2,028	2,050	2,100	2,150	2,200	2,25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850	850	860	870	880	890
		①국비	-	-	-	-	-	-
		②도비	255	255	258	261	264	267
		③시군	595	595	602	609	616	623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명)	보조금 지급인원	명	2,028	2,050	2,100	2,150	2,200	2,250

□ 기대효과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로
개인 수요에 맞는 기타 경제활동 여력증가

6-2-4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2.4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일반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양정현	8008-4329

□ 배경 및 필요성

-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미비로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어 일반 장애인복지서비스 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 사업목적

-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사업)
- (대상) 경기도 내 뇌병변장애인
- (내용)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개소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개소)	-	-	-	1	1	1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	-	30	900	400	400
①국비	-	-	-	-	-	-
②도비	-	-	30	900	400	400
③시군	-	-	-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뇌병변장애인 건립 및 운영(개소)	개소	-	-	-	1	1	1

□ 기대효과

-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가능으로 도민 만족도 증가

6.3

장애인 ‘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여부	신규사업여부
	6.3	어디나 돌봄	중점	신규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미선	8008-448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이승태	8008-5148

□ 배경 및 필요성

- (야간·휴일)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 대두

※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 0.35%로 저조(전국민 평생학습 참여 40%) <출처 : 국가평생교육통계>

- (맞춤돌봄)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종증 장애인은 도전적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인력 필요
- (가족돌봄) 최종증 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으로 복지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입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돌봄부담 가중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나 돌봄으로 돌봄공백 해소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시군·시설·가정 구별 없이 돌봄 제공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①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야간·휴일 돌봄공백 해소 •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추진 ○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 기관돌봄,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등 지원
	② 최종증 장애인 맞춤 돌봄	①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 • 돌봄 추가수당 지급, 전문적·통합적 맞춤 돌봄 지원 ② 가족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회복지원 • 가족생활수당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29조의3
-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4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
- 민선 8기 공약사항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돌봄인력 · 발달장애인 가족 등

○ 방 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공기관 대행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 소요예산 : 4,224백만 원(도비 100%) <세부내역 : 붙임1>

○ 사업내용 : 장애 돌봄 3종 서비스 제공

사업명	①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②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도내 장애인(가족)	• 도내 18 ~ 64세 최중증 장애인 (60명)과 그 가족 • 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 등 돌봄 전문인력 350명	• 도내 18 ~ 64세 복지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210가구)
내 용	• 19개 시·군 장애인시설 · 단체 등 42개소 운영기관 에서 3종* 서비스 제공 * ① 기관중심 돌봄형 ② 관중심 프로그램형 ③ 자조모임중심 자율형 ※ 수탁기관 : 기도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누림)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 교육 과정 운영 • 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 지급 (15~25만원) •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 돌봄 지원 * 도전적 행동 컨설팅, 긴급돌봄 지원 등	• 가족생활수당* 지급 * (월 40만원 9개월/4월~12월) • 공통형·선택형* 서비스 제공 * (부모후식, 시각장애인마사지, 홈케어서비스, 부모양육코칭) • 가족돌봄 수당 지급 대상 최 중증 장애인 사례관리 ※ 복지서비스 및 시설·기관 연계 지원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지원
예 산	2,119백만 원	2,105백만원	
		1,175백만원	930백만원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어디나 돌봄 기본계획 수립						
공기관 사업 위수탁 협약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어디나 돌봄' 3개 세부사업	사업량(개/명)			24/470	24/470	24/470	24/470	24/470
	예산액 (백만원)	합계 (①+②+③)	신규	4,224	4,224	4,224	4,224	4,224
		①국비						
		②도비	신규	4,224	4,224	4,224	4,224	4,224
		③시군						

□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단위작성)	지표산출 근거	성과목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개	신규	42	42	42	42	42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돌봄 지원	전문인력 수	명	신규	350	350	350	350	350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원인원	가구	신규	210	210	210	210	210

□ 기대효과

- (야간·휴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여 장애인 야간이나 휴일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돌봄공백 해소
- (맞춤돌봄)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현장중심 전문교육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돌봄 품질 향상
- (가족돌봄)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예방

참고 장애인 등록현황('23. 12월 기준)

□ 전국 장애인 종별 및 정도별 현황

장애유형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652,860 (100%)	983,928 (37.1%)	586,421 (22.1%)	397,507 (15.0%)	1,668,932 (62.9%)	948,234 (35.7%)	720,698 (27.2%)
지체	1,176,291	228,241	149,627	78,614	948,050	533,556	414,494
뇌병변	245,477	142,271	77,212	65,059	103,206	64,010	39,196
시각	250,767	46,427	23,621	22,806	204,340	125,288	79,052
청각	425,224	88,668	46,712	41,956	336,556	176,788	159,768
언어	23,349	11,619	8,184	3,435	11,730	8,397	3,333
지적	225,708	225,708	135,959	89,749	0	0	0
자폐성	37,603	37,603	31,324	6,279	0	0	0
정신	104,424	103,680	52,464	51,216	744	457	287
신장	105,842	79,225	47,389	31,836	26,617	15,566	11,051
심장	5,078	3,873	2,452	1,421	1,205	829	376
호흡기	11,451	10,981	8,147	2,834	470	286	184
간	15,066	722	517	205	14,344	9,990	4,354
안면	2,725	1,386	790	596	1,339	806	533
장루·요루	16,779	1,610	999	611	15,169	9,437	5,732
뇌전증	7,076	1,914	1,024	890	5,162	2,824	2,338

□ 경기도 장애인 종별 및 정도별 현황

장애유형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84,834 (100.0%)	215,402 (36.8%)	129,415 (22.1%)	85,987 (14.7%)	369,432 (63.2%)	218,579 (37.4%)	150,853 (25.8%)
지체	264,274	49,449	32,616	16,833	214,825	126,599	88,226
뇌병변	55,056	32,554	17,675	14,879	22,502	14,236	8,266
시각	54,916	9,399	4,750	4,649	45,517	28,847	16,670
청각	86,690	18,959	10,015	8,944	67,731	36,969	30,762
언어	5,462	2,577	1,837	740	2,885	2,125	760
지적	48,448	48,448	29,702	18,746	0	0	0
자폐성	10,284	10,284	8,637	1,647	0	0	0
정신	20,146	19,960	9,621	10,339	186	110	76
신장	25,885	19,113	11,435	7,678	6,772	3,867	2,905
심장	1,270	974	631	343	296	206	90
호흡기	2,546	2,419	1,737	682	127	80	47
간	3,863	173	126	47	3,690	2,549	1,141
안면	633	334	194	140	299	183	116
장루·요루	3,940	364	229	135	3,576	2,261	1,315
뇌전증	1,421	395	210	185	1,026	547	479

□ 경기도 시·군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시·군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계	584,834	264,274	55,056	54,916	86,690	5,462	48,448	10,284
수원시	44,033	19,476	4,168	4,514	6,366	444	3,519	887
성남시	36,091	14,787	3,572	3,507	6,124	324	2,927	797
부천시	37,692	16,681	3,435	3,566	6,109	360	2,947	595
용인시	37,372	15,570	3,840	3,474	6,079	348	2,912	891
안산시	33,276	16,594	2,684	2,875	4,617	303	2,845	412
안양시	21,330	9,499	2,077	2,051	3,292	191	1,505	395
평택시	25,931	12,720	2,170	2,314	3,633	227	2,269	282
시흥시	22,125	10,850	1,921	1,920	3,200	228	1,707	301
화성시	31,196	14,754	2,762	2,818	4,426	359	2,563	631
광명시	12,638	5,747	1,181	1,222	1,826	113	976	203
군포시	11,718	5,119	1,090	1,108	2,048	102	799	205
광주시	17,340	7,895	1,724	1,625	2,435	175	1,617	255
김포시	18,718	8,604	1,757	1,842	2,635	184	1,440	335
이천시	10,924	5,032	890	977	1,444	93	1,273	197
안성시	11,216	5,217	920	1,047	1,698	83	1,190	120
오산시	8,916	3,997	769	854	1,126	103	878	139
하남시	12,005	5,370	1,204	1,120	1,859	115	852	258
의왕시	6,559	2,921	638	587	1,058	46	458	131
여주시	7,553	3,428	754	753	938	58	870	77
양평군	8,143	3,611	758	708	1,181	82	950	106
과천시	2,257	872	242	210	430	16	173	90
고양시	42,689	17,895	4,436	4,172	6,503	411	3,334	1,121
남양주시	33,273	15,732	3,227	3,182	4,508	309	2,537	515
의정부시	22,470	10,027	2,344	2,239	3,330	181	1,671	345
파주시	22,409	9,979	2,230	2,082	3,300	227	1,958	492
구리시	8,546	4,092	744	808	1,169	73	656	146
양주시	12,955	5,950	1,250	1,152	1,755	128	1,114	181
포천시	10,413	5,153	882	915	1,357	69	1,046	67
동두천시	6,429	2,833	668	569	933	52	564	51
가평군	5,179	2,121	436	397	807	37	619	37
연천군	3,438	1,748	283	308	504	21	279	22

시군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0,146	25,885	1,270	2,546	3,863	633	3,940	1,421
수원시	1,587	2,098	73	157	272	43	313	116
성남시	1,409	1,691	117	199	260	37	264	76
부천시	1,440	1,744	56	149	236	51	227	96
용인시	1,515	1,771	100	160	318	37	289	68
안산시	1,010	1,318	68	106	154	31	171	88
안양시	727	1,107	40	86	130	22	146	62
평택시	764	995	64	112	151	28	153	49
시흥시	600	934	41	83	149	25	121	45
화성시	981	1,232	69	104	196	37	199	65
광명시	479	570	27	69	92	11	79	43
군포시	416	561	25	72	62	11	78	22
광주시	376	781	46	102	125	17	133	34
김포시	565	883	47	83	117	27	145	54
이천시	336	457	11	45	73	13	56	27
안성시	349	384	15	39	61	11	60	22
오산시	450	377	21	41	69	15	54	23
하남시	346	575	26	62	93	11	90	24
의왕시	232	306	13	27	59	4	54	25
여주시	250	262	11	27	52	11	48	14
양평군	253	295	13	32	63	10	63	18
과천시	75	93	6	9	14	3	20	4
고양시	1,574	2,093	107	235	361	45	312	90
남양주시	909	1,514	77	170	216	31	247	99
의정부시	827	1,030	44	93	121	25	134	59
파주시	663	907	60	103	141	23	170	74
구리시	243	426	24	35	44	8	53	25
양주시	554	562	31	51	75	19	98	35
포천시	311	394	10	32	72	8	72	25
동두천시	345	257	16	38	29	9	45	20
가평군	444	168	9	18	38	5	31	12
연천군	116	100	3	7	20	5	1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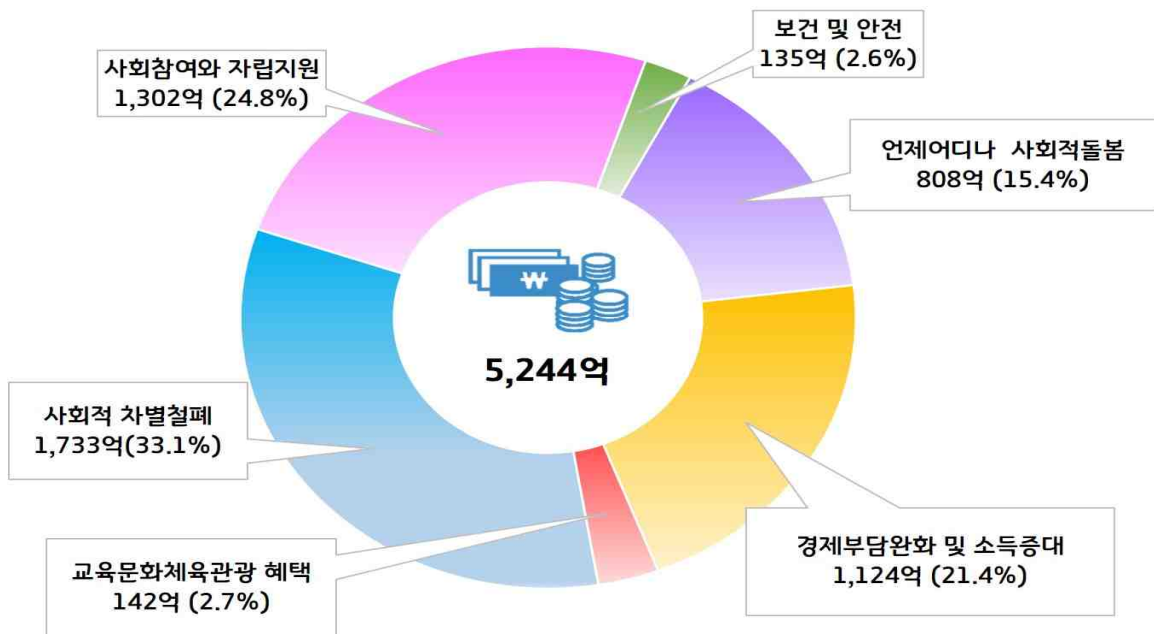
□ 경기도 시·군 성별 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시군	성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계	584,834	347,994	236,840	215,402	129,415	85,987	369,432	218,579	150,853
수원시	44,033	25,953	18,080	16,473	9,752	6,721	27,560	16,201	11,359
성남시	36,091	21,004	15,087	13,601	8,050	5,551	22,490	12,954	9,536
부천시	37,692	22,802	14,890	14,041	8,531	5,510	23,651	14,271	9,380
용인시	37,372	21,688	15,684	13,953	8,047	5,906	23,419	13,641	9,778
안산시	33,276	20,429	12,847	11,876	7,260	4,616	21,400	13,169	8,231
안양시	21,330	12,518	8,812	7,497	4,498	2,999	13,833	8,020	5,813
평택시	25,931	15,503	10,428	9,164	5,432	3,732	16,767	10,071	6,696
시흥시	22,125	13,806	8,319	7,858	4,824	3,034	14,267	8,982	5,285
화성시	31,196	19,389	11,807	11,078	6,828	4,250	20,118	12,561	7,557
광명시	12,638	7,489	5,149	4,724	2,837	1,887	7,914	4,652	3,262
군포시	11,718	6,877	4,841	4,184	2,504	1,680	7,534	4,373	3,161
광주시	17,340	10,592	6,748	6,193	3,773	2,420	11,147	6,819	4,328
김포시	18,718	11,363	7,355	6,720	4,111	2,609	11,998	7,252	4,746
이천시	10,924	6,566	4,358	4,409	2,677	1,732	6,515	3,889	2,626
안성시	11,216	6,717	4,499	4,292	2,602	1,690	6,924	4,115	2,809
오산시	8,916	5,465	3,451	3,512	2,105	1,407	5,404	3,360	2,044
하남시	12,005	7,112	4,893	4,316	2,610	1,706	7,689	4,502	3,187
의왕시	6,559	3,813	2,746	2,243	1,298	945	4,316	2,515	1,801
여주시	7,553	4,498	3,055	3,088	1,899	1,189	4,465	2,599	1,866
양평군	8,143	4,761	3,382	3,125	1,899	1,226	5,018	2,862	2,156
파천시	2,257	1,294	963	850	504	346	1,407	790	617
고양시	42,689	24,516	18,173	16,032	9,551	6,481	26,657	14,965	11,692
남양주시	33,273	19,831	13,442	11,624	7,099	4,525	21,649	12,732	8,917
의정부시	22,470	12,999	9,471	8,356	4,926	3,430	14,114	8,073	6,041
파주시	22,409	13,159	9,250	8,428	5,077	3,351	13,981	8,082	5,899
구리시	8,546	5,098	3,448	2,980	1,819	1,161	5,566	3,279	2,287
양주시	12,955	7,689	5,266	4,943	2,914	2,029	8,012	4,775	3,237
포천시	10,413	6,330	4,083	3,821	2,379	1,442	6,592	3,951	2,641
동두천시	6,429	3,685	2,744	2,599	1,531	1,068	3,830	2,154	1,676
가평군	5,179	3,069	2,110	2,198	1,323	875	2,981	1,746	1,235
연천군	3,438	1,979	1,459	1,224	755	469	2,214	1,224	990

IV

2024년 추진계획

- 비전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 구성 : 6대 분야, 20개 과제, 65개 세부사업
- 추진부서 : 9개 실·국, 15개 부서
- 총사업비 : 5,244억원(전년 대비 757억원 ↑, 16.8% ↑)
- ※ 재원 : (국비) 552억원, (도비) 1,495억원, (시·군비) 3,197억원



□ 정책목표별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세부 사업수	예산		
		2023년	2024년	증감율
합계	65	4,487	5,244	16.8%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11	957	1,125	17.5%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11	281	142	△49.5%*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9	1,400	1,733	23.7%*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11	1,028	1,302	26.7%
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13	117	135	15.3%
⑥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10	704	807	14.6%

*주요 감소 사유: 국민체육센터 건립완료로 건설사업비 감액(△310억)

**신규편성 12개 사업 예산편성 현황 : 130억(국비 12억, 도비 64억, 시·군비 54억)

주요사업 추진계획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 ◆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공약**+**기회**

- (사업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일반형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발달장애인요양보조사 보조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원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약**+**기회**

- (사업대상) 도내 등록·미취업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공약**+**기회**

- (사업대상)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1,533명)
- (사업내용)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수당 지원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공약**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1인당 월 6만원 지급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공약**+**기회**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19세~23세(연도말 기준) 정도가 심한 장애인(6,000명)
- (사업내용)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월 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2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 ◆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문화·체육 분야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31개 시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1개소, 평생교육사 43명
- (사업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

2-1-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신규('24)}

- (사업대상) 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기관·단체·평생교육시설 등
- (사업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및 기반구축·종사자 역량강화 등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 (사업량)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2,000명)
-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원 발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공약+****기회**

- (사업량)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50개팀
- (사업내용)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4명 이상) 50여개팀 육성 및 지원

2-2-3.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기회 확대 **기회**

- (사업대상) 70세 이상 노인(+동반 1인), 등록 장애인(+동반 1인)
- (사업내용) 도내 프로스포츠경기 경기 관람권 할인 지원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기회**

- (사업대상) 도 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예술인
- (사업내용)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및 예술활동 장려·지원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기회**

- (사업대상) 도 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예술인
- (사업내용) 기초-심화 단계별 전문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 강화 · 인식개선사업추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강화

3-1-1, 3-1-2.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 (사 업 량) 특별교통수단 104대 도입 지원/특별교통수단 1,209대 운영
- (사업내용)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제공

3-1-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공약**

- (사 업 량)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시스템 관리 및 시·군 센터 협의 등

3-2-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

- (사 업 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남부1, 북부1) 운영
- (사업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교육·홍보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 및 파견^{신규('24)}

- (사업대상) 道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전문 이론 교육 및 현장훈련을 통한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20명)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 (사 업 량) 31개 시·군 조사요원(43명) 활동
- (사업내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적합성 승인 건축물 및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시설 조사

3-3-2.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신규('24)}

- (사 업 량)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 시·군 31개소)
- (사업내용) 건축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 업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사 업 량)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9개 기관(2,268명)
- (사업내용) 장애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

4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 ◆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창출 발판마련 및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지원

4-1-1. 장애인 기회소득

- (사업대상) 道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0명 **기회**
- (사업내용) 장애인의 사회적가치활동 보상으로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월 10만원)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사업대상) 道 소속 16개 장애인단체
- (조사내용) 16개 장애인단체 추진 45개 행사 및 복지사업 지원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공약**+**기회**

- (사업량) 25개 시·군 운영 80채, 신규설치 3개 시군 5채
- (사업내용)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 지원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공약**

- (사업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 (사업내용)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 경비(임대보증금, 월세 등) 지원

4-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신규('24)}

-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사업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서비스 지원

4-3-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사업대상) 만6세 ~ 만64세까지의 모든 장애인 (소득무관 17,274명)
- (사업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 장애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 ◆ 사회적약자 노인·아동·여성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신규('24)}

- (사업량)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 운영(단국대죽전치과병원, 명지병원)
- (사업내용) 고난이도의 장애인 치과진료 및 센터 진료비 지원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 (사업량)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지원내용)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5-2-1.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 (사업대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사업내용)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 (사업대상) 도내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 (사업내용) 장애아동 전문인력 1명 지원, 프로그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남·북부 2개소)
- (사업내용)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선별 및 치료연계, 보육교직원·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5-2-4. 고령장애인 쉼터

- (사업대상) 도내 만6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사업량) 고령장애인 쉼터 17개소 운영 지원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 (사업대상) 도내 6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
- (사업내용) 농아노인들의 복지후생·재활문화·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및 야간·유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6-1-1.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사 업 량) 북부장애인복지종합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사업내용)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

- (사 업 량) 장애인 365쉼터 14개소 운영(남부 9개소 / 북부 5개소)
- (지원내용) 유희공간이 있는 거주시설(단기)을 장애인 365쉼터로 지정·운영

6-1-3.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 (사 업 량) 주간이용시설 154개소(남부 123개소, 북부 31개소)
- (사업내용) 낮 시간동안 활동지원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6-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사 업 량) 심한 뇌병변장애인 31개 시·군 1,419명
- (사업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내 / 분기별 지원)

6-3-1.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19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42개소 이용 장애인(가족)
- (사업내용) 장애인시설·단체 등 42개소 운영기관에서 3종* 서비스 제공

* 기관중심 돌봄형/ 관중심 프로그램형/ 자조모임중심 자율형

6-3-2.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지원

- (사업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 (사 업 량)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 교육과정 운영

6-3-3.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 (사업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
- (사업내용) 가족생활수당 지급(월 40만원 9개월/4월~12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증감율)		비고
			2023	2024	
합 계			448,716	524,439	증75,723 (증16.8%)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95,688	112,487	
중점 과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공약 기회	65,748	70,136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 기회	250	250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약 기회	6,252	9,877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공약 기회	2,979	2,943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2,551	3,075	신규사업 (24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공약	12,872	18,812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661	552	신규사업 (24년)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655	631	신규사업 (24년)
		1-3-4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0	0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91.6	691.6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공약 기회	3,028	5,520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28,107	14,172	
중점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2-1-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52	52	
일반 과제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149	3,149	
		2-1-3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2,780	1,600	신규사업 (24년)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1,195	1,195	
		중점 과제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공약 기회	100	200
중점 과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람의 기회강화	2-2-1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1,776	1,510	
일반 과제		2-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14,200	2,200	
중점 과제		2-2-3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기회	776	576	
일반 과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회	1,133	1,288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기회	700	800	
	경기도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2-4-1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2,246	1,602	

(단위 : 백만 원)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증감율)		비고
				2023	2024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140,031	173,314	
중점 과제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권 강화	3-1-1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4,784	8,188	
		3-1-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27,093	153,061	
		3-1-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구축 공약	1,777	5,190	
일반 과제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익옹호 체계강화	3-2-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강화	1,570	1,835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파견	252	139	신규사업 (24년)
		3-2-3	장애인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184	209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1,229	1,277	
		3-3-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952	3,225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90	190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102,774	130,231	
중점 과제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지원	4-1-1	장애인 기회소득 공약	2,300	10,000	
일반 과제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998	7,619	
일반 과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설치	305	321	
		4-2-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2,663	13,305	
		4-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공약 기회	4,110	4,401	
중점 과제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공약	420	460	
일반 과제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공약 기회	600	700	
중점 과제		4-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0	2,000	신규사업 (24년)
일반 과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4-3-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59,861	70,326	
		4-3-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12,885	17,466	
		4-3-3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3,632	3,633	

(단위 : 백만 원)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증감율)		추진상황 (성과)
				2023	2024	
[5]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11,709	13,489	
일반 과제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117	0	신규사업 (’24년)
중점 과제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898	878	
		5-1-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1,281	1,238	
		5-1-4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0	30	
일반 과제	장애아동 및 고령장애인의 정책강화	5-2-1	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0	1,216	
중점 과제		5-2-2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1,266	1,159	
		5-2-3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1,626	1,718	
		5-2-4	고령장애인 쉼터	1,260	1,260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642	691	
일반 과제	여성/가족/소수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55	265	신규사업 (’24년)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05	230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4,159	4,804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0	0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70,407	80,745	
일반 과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6-1-1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436	450	
중점 과제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	1,270	1,326	
		6-1-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확대	66,311	72,212	
중점 과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강화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388	531	
		6-2-2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공약 기회	1,152	1,152	
		6-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850	850	
일반 과제		6-2-4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0	0	신규사업 (’24년)
중점 과제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통한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	6-3-1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0	4,224	신규사업 (’24년)
		6-3-2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지원			신규사업 (’24년)
		6-3-3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신규사업 (’24년)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점

공약+기회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9급	윤진리		8008-614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수행기관) 경기도 및 31개 시군
- (사업내용)
 - (일반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공공기관 등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주 40시간)
 - (시간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공공기관 등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주 20시간)
 - (복지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전용주차제도, 환경정비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월 56시간)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 지원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지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관리 도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및 민간수행기관
- (추진절차) (도) 사업비 및 사업량 확정 통보 → (시군)(수행기관) 참여자 및 배치기관 모집 및 선정·배치 → (도) 사업비 지급 → (시군)(수행기관) 사업수행 및 사업실적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경기도 31개 시군 4,708명 일자리 지원
- (사업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추진일정) 시군 참여자 모집 및 선정('23.12) → 참여자 배치 및 근무 시작('24.1.1) → 근무 종료('24.12.31)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수	4,984명 참여	4,708명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65,997,107	65,997,107	71,012,975	

1-1-2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중점 공약+기회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 6급 김성겸		8008-5147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조례」 제5조 (취업알선 등)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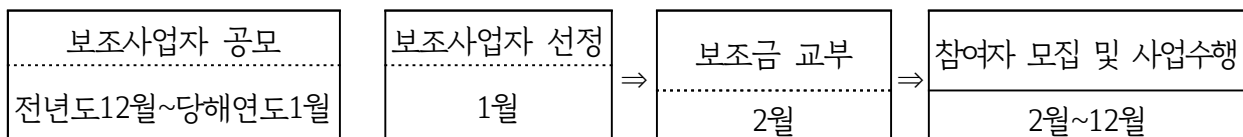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정도별·지역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등록·미취업 장애인
- (사업기간) 2024. 2월~12월(11개월)
- (사업량) 5개소 25명
- (사업내용)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장애유형별 직무 발굴 및 민간취업 연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5개소 25명
- (사업대상) 도내 등록·미취업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 '24.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4. 2월 ~ 12월
 - 2025년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4. 12월
 - 사업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 (수행기관→도)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각 보조사업자별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40명	25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250,000	236,007	250,000	

과제별 번호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중점
공약+기회**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 6급 김성겸		8008-5147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조례」 제5조 (취업알선 등)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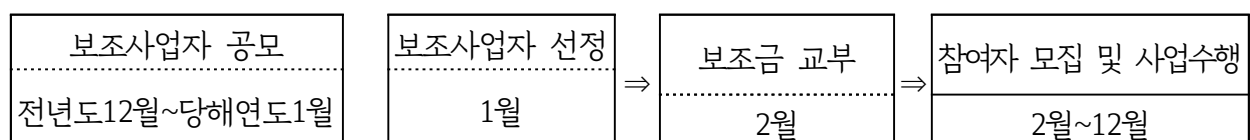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정도별·지역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등록·미취업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2024. 2월~12월(11개월)
- (사업량) 33개소 665명
- (사업내용) 장애인의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특화 직무 일자리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33개소 665명
- (사업대상) 도내 등록·미취업 중증장애인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 '24.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4. 2월 ~ 12월
 - 2025년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4. 12월
 - 사업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 (수행기관→도)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각 보조사업자별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576명	665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6,414,952	5,699,826	8,889,029	

1-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증점 공약+기회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6급 임현주		8008-514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 사업내용

-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수당 지원
* 훈련수당 50천원, 교통수당 50천원, 급식수당 60천원 포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31개 시·군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533명
- (사업대상)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 (추진일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훈련장애인 수	1,552명	1,533명	

□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2,979,840	2,979,840	2,943,360	

1-2-2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9급	윤진리		8008-614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직업재활 지원조례」 제6조 (취업 후 적응지도 등)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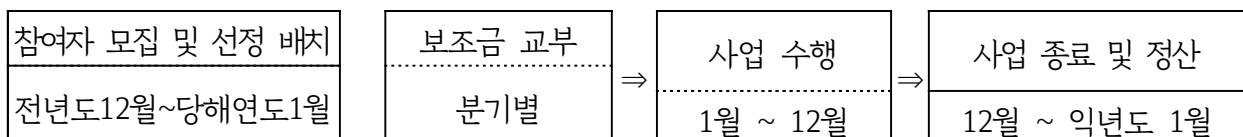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
- (사업기간) 2024. 1. 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량) 29개 시군 80명 직무지도원 파견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등을 위해 직무지도원 배치
 - (배치기관) 시·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수행기관
 - (배치기준) 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 10~13명당 직무지도원 1명 배치(권고)
 - (지원내용) 인건비(道 생활임금) 및 출장비·운영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및 수행기관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29개 시군 직무지도원 80명

○ (사업대상)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

○ (추진일정)

- 직무지도원 모집 공고 : '23. 12월
- 직무지도원 선정 및 배치 : '24.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4. 1월 ~ 12월
- 사업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 (시군→도)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직무지도원 참여자수	시군별 직무지도원 참여자수	62명	8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2,550,718	2,550,718	3,074,720	

1-3-1	도비 장애수당 지급	중점 공약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임세윤	연락처	8008-4436
		담당자	행정7급 한윤정		8008-432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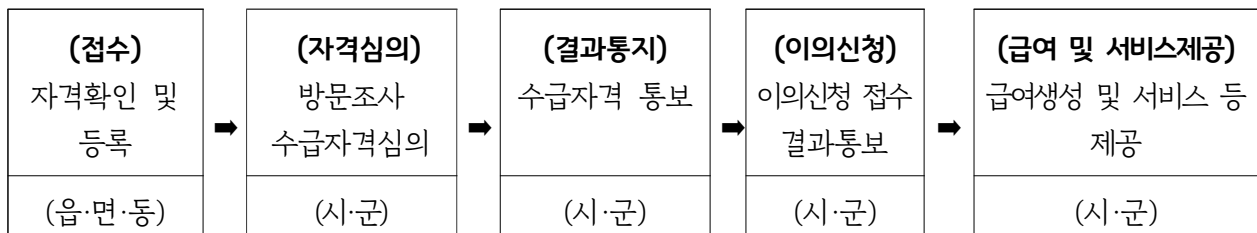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8,812,160천원(도비 4,962,459, 시군비 13,849,701)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 1인당 월 6만원 지급

○ (추진일정)

-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도비 장애수당 수급자	시군 수요조사	27,325명	26,128명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도비 장애수당	12,872,667	12,082,632	18,812,160	

1-3-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7급 임지윤		8008-435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목적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 (대상)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내용) 입원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연 150만원 이내(1회 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31개 시·군
- (추진절차) (읍·면·동) 의료비 신청 접수 → (시·군) 신청서 및 조사서 확인
→ (도) 분기별 자금교부 및 실적취합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저소득 장애인 368명에게 연간 150만원 이내 입원 의료비 지급

○ (사업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추진일정)

- 연중 지급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지급 대상자 수	정산보고서	441명	368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533,747	533,747	551,862	

1-3-3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사회복지 7급 김은지		8008-431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업목적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
 - ※ 국비 보조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 건강보험법에 정한 품목 :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 보조기기 품목분류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된 품목 : 1개 품목 (연간 150만원 이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31개 시·군
- (추진절차)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 후 자격기준 검토 및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부 결정 및 교부 실시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31개 시·군 422건 지원 목표

○ (사업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

※ 국비 보조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 (추진일정)

- 시·군별 수요조사 및 자금교부 후 신청 및 교부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보조기기 지원 명수	보조기기 지원 명수	364	422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655,200	387,358	627,285	

1-3-4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반
-------	---------------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팀장	주택정책팀장	김춘식	연락처	8008-4926
		담당자	시설6급	정대교		8008-4932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1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5조

□ 사업목적

- (사업배경) 탈시설 등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증가로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필요
- (사업목적)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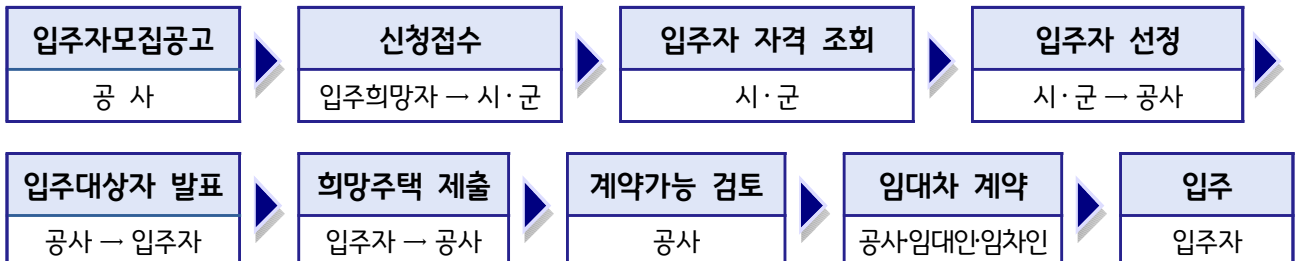
- (주요내용) 장애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GH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대상 ‘우선 공급’ 및 ‘1순위’ 공급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대상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급 및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행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 공급 가능)
- (사업대상) 소득(월평균소득 70% 혹은 중위소득 100% 등) 기준 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등)
- (추진현황) 道 내 장애인 대상 GH 공공임대주택 2,010호 공급 ('18.~'23년)
 - ['18년] 281호 → ['19년] 507호 → ['20년] 510호 → ['21년] 218호 → ['22년] 189호 → ['23년] 305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 (추진절차)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절차 참조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추진계획) 장애인 대상 GH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30호 공급('24년)

※ '23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지표(130호) 적용하되, 수요에 따라 공급물량(300호 내외) 조정 가능

○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추진일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 임차 계약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시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	305호	130호	

□ 예산현황 : 해당없음 (비예산)

1-3-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일반
-------	------------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팀장	주거복지팀장	이명섭	연락처	8008-4923
		담당자	행정7급	최진영		8008-322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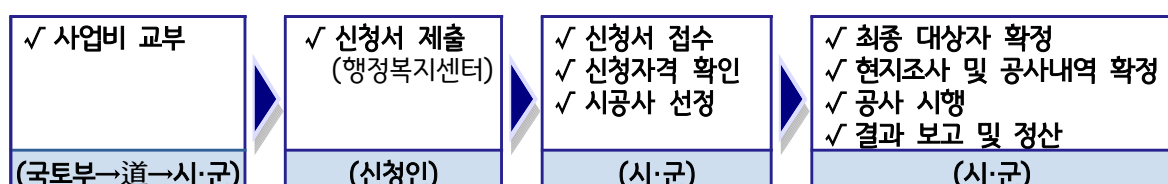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사업내용)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 출입문(손잡이, 문턱), 바닥, 욕실, 부엌 등 주거약자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개조
 - **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28개 시·군 182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사업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추진내용)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평균 38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주택 내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해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 수혜가구(호)	166호	182호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91,600	691,600	691,600	국비 50 % 시군비 50%

1-4-1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중점 공약+기회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사회복지6급 장미애			8008-4325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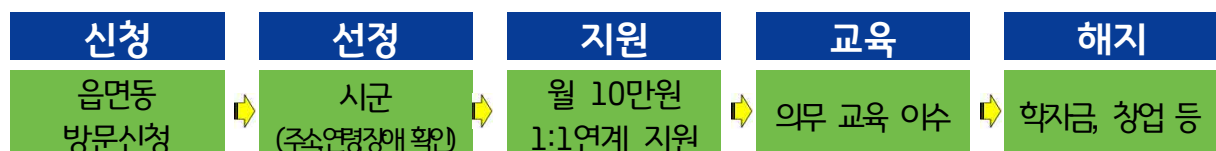
-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층 추락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량) 6,036명 (신규 모집 2,400명, 기 가입자('22~'23년) 3,636명)
- (총사업비) 5,520,000천원 (도 30%, 시군 70%)
- (수행기관) 시군 및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23세(연도말 기준)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경기도 거주 19세~23세(연도말 기준)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36명
 - `23년 기 모집자 : 3,636명
 - `24년 모집예정자 : 2,400명(`01년생 1,200명, `05년생 1,200명)
- (추진내용)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월 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누림통장 가입자 수	누림통장 가입자	3,636명	6,036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028,300	2,942,599	5,520,000	도비 30 % 시군비 70%

2-1-1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체계구축	일반
-------	-----------------------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팀장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연락처	8008-4980
		담당자	행정6급 김순자		8008-4590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전파,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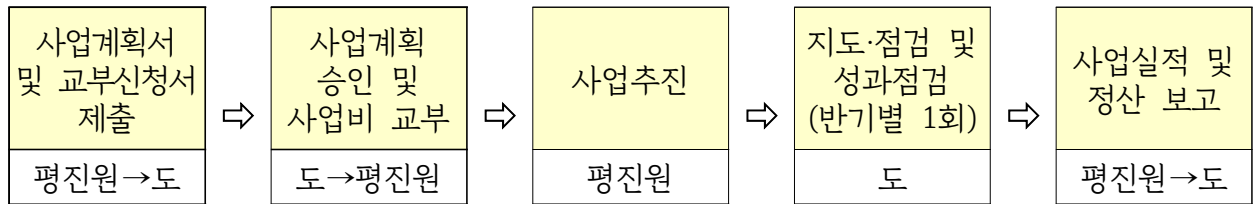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방법 : 공기관 위탁(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사업비 : 52,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직무교육 2회, 우수사례 발표회 1회
- (사업대상) 장애인·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종사자, 공무원 등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도→진흥원) : '24. 2월
 - 학습자 모집, 역량강화 직무 교육 운영(진흥원) : '24. 3~8월
 - 우수사례 모집 및 심사(진흥원) : '24. 9~10월
 -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진흥원) : '24.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진흥원→도) : '24.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자 수	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참여자	223명	15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52,000	51,000	52,000	
직무교육	20,000	20,000	12,000	
우수사례발표회	32,000	31,000	40,000	

2-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
-------	------------------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팀장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연락처	8008-4980
		담당자	행정6급 김순자		8008-4590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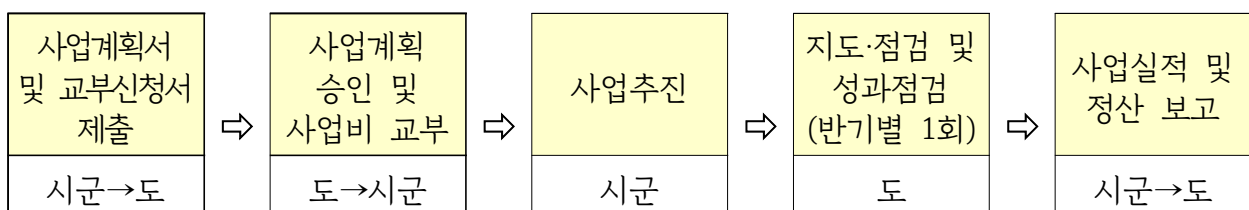
-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방법 : 시군 보조사업
- 사업비 : 3,149백만원(도비 945, 시군비 2,204)
- 사업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1개 시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4개 시군, 23개 시설, 평생교육사 43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직영 또는 위탁 등)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31개 시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1개소, 평생교육사 43명
- (사업대상) 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기관·단체·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 (추진일정)
 - '24년 사업 기본계획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4. 1월
 - 사업추진(시군) : '24. 2~12월
 - 사업 모니터링(도, 시군) : '24. 3~11월
 -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도)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장애인 참여자수 (실인원)	6,695명	6,50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149,000	3,079,217	3,149,000	

2-1-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디지털교육협력팀	팀장	디지털교육협력팀장 정광식	연락처	8008-4980
		담당자	행정6급 김순자		8008-4590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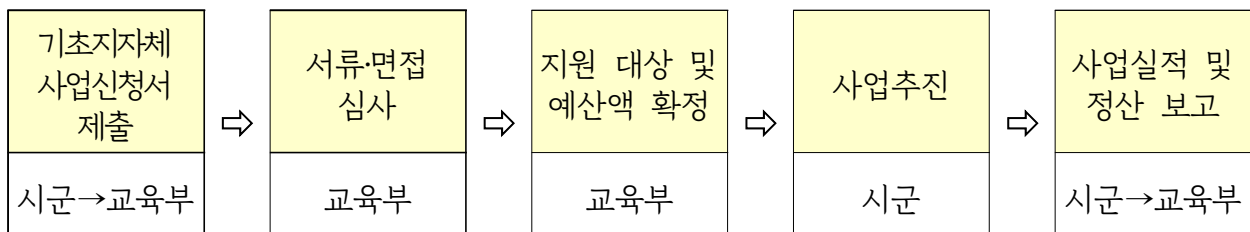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교육 접근성 제고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방법 : 국비 - 시군 보조사업
- 사업비 : 2,780백만원(국비 1,390, 시군비 1,390)
- 사업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 기반구축,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 성과 공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직영 또는 위탁 등)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8개 시군
- (사업대상) 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기관·단체·평생교육시설 등
- (추진일정)
 - 지원 시군 사업비 교부(교육부) : '24. 1월
 - 사업추진(시군) : '24. 2~11월
 -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교육부)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수	8개 시군	2개 시군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780,000	2,780,000	1,600,000	

2-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팀장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윤영묵	연락처	8008-6150
		담당자	사회7급 이승태		8008-514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사업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사업량 : 3개소(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 총사업비 : 1,195,34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주체 : 시군 자체 추진(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업무대행)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원 발굴
 - 발달장애인 개별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3개 시·군(시흥, 의정부, 구리)
- (추진절차) 道 → 시·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3개 시·군
- (사업대상) 평생교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대상자	분기 보고	2,374명	2,00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1,194,000	1,194,000	1,195,340	

2-1-5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중점 공약+기회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팀장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윤영묵	연락처	8008-6150
		담당자	행정8급 송지연		8008-514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 욕구 등을 고려한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량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50개팀
- 사업비 : 200,000천원(도비 100%)
- 수행기관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수탁 운영
- 사업내용 :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4명 이상) 50여개팀 육성 및 지원
※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자립훈련을 통해 독립을 희망하는 당사자 우선 참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추진절차) 자조모임 지원 대상자(개인,기관) 서비스 신청(1~2월)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사(2~4월) → 개인 및 유관기관에 프로그램 지원 등(사업설명회, 조력자 교육 및 간담회 등)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50개팀 선정 및 지원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발달장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자조모임 수	40개팀	50개팀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100,000	100,000	200,000	

2-2-1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중점
-------	--------------------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팀장	체육지원팀장	최종락	연락처	8008-4536
		담당자	행정 6급	최경필		8008-470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사업목적

-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내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도내 장애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생활체육클럽 및 교실, 체험교실, 캠프)
 - 장애인 종목 체험 제공을 통한 장애인식개선(플레이박스 운영)
 - 체육활동 홍보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 사 업 비 : 1,510,500천원(도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추진절차)

- (공모) 생활체육클럽, 생활체육교실, 체험교실, 캠프
 - 계획수립 → 공모선정 및 예산교부 → 사업운영 → 정산 → 결과보고
- (직접) 플레이박스
 - 계획수립 → 사업안내 → 신청·접수 → 선정 → 체험 및 교육제공 → 결과보고
- (직접) 언택트사업
 - 계획수립 → 비대면 영상물 유지관리 → 사업운영 → 결과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생활체육클럽(100개소), 생활체육교실(200개소), 체험교실(5개소), 캠프(5개소)
- 플레이박스 운영 및 온라인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

○ (사업대상)

- 시·군장애인체육회, 도가맹경기단체, 도내 초·중등학교 등

○ (추진일정)

- 2024. 1. 연간계획수립
- 2024. 1. ~ 2. 공모(신청) 접수 및 선정
- 2024. 3. ~ 10. 사업운영
- 2024. 11. 운영보고 및 정산
- 2024. 12. 결과보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생활체육클럽확대	클럽운영개소	448개소(누적)	548개소(누적)	
생활체육교실확대	교실운영개소	819개소(누적)	1,019개소(누적)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784,000	1,784,000	1,510,50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팀장	체육지원팀장	최종락	연락처	8008-4536
		담당자	행정 7급	김늘빛		8008-4704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사업목적

-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 지자체 지원(2019.1. 문체부 신규사업)
 - '20년 12개소, '21년 16개소, '22년 14개소, '23년 7개소 건립 지원
- 사업기간 :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추진방법 : 31개 시군 공모
- 지원금액 : 30~40억원 정액지원
- 지원범위 : 설계·감리비·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기초(광역) 자치단체
- (추진절차) 시·군 ⇒ 도 ⇒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에서 취합 제출)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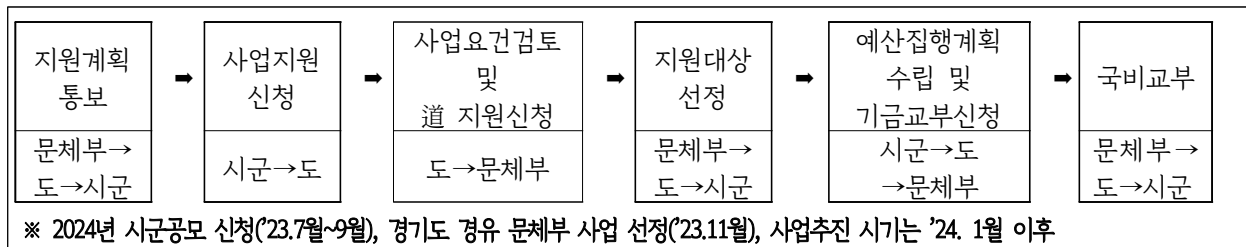
○ (사업대상) 2개 시군, 2개소 건립비 지원

※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총 18개소(공모 선정 누적개수)

○ (총사업비) : 2,200,000천원(국비 정액 보조)

- 개소당 30~40억원 정액 지원

○ (추진일정)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장애인 생활밀착형)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18개소 선정 (누적개소수)	19개소 선정 (누적개소수)	

※ 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는 단년도 사업('20년~'23년)의 누적치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 생활밀착형)	14,200,000	14,200,000	2,200,00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팀장	체육지원팀장	최종락	연락처	8008-4536
		담당자	행정 6급	최경필		8008-4703

1 사업개요**□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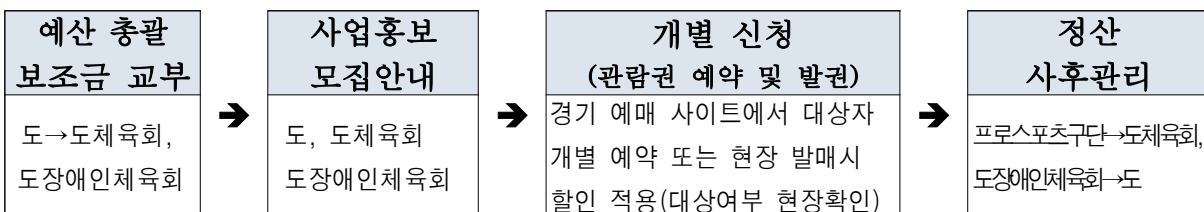
-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경기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4조, 제8조
-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사업목적

- 스포츠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에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비용 지원을 통해 스포츠권(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프로스포츠경기 경기 관람권 할인 지원
- 추진방향 : 도내 전 프로스포츠단(18개)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 대상경기 : 도 내 연고 프로스포츠단 홈경기(농구, 야구, 배구, 농구)
- 운영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경기도체육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노인(+동반 1인), 등록 장애인(+동반 1인)
- (총사업비) 575,350천원
- (추진일정)
 - 예산교부(1~2월) → 사업진행(3월~12월) → 정산확정('24.하반기)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 경기도 프로스포츠 관람 지원	장애인 프로스포츠 경기도 홈경기 관람지원	320경기	300경기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경기도 프로스포츠 관람 지원	776,350	776,350	576,350	

2-3-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일반 기획
-------	----------------	----------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예술인권익지원팀	팀장	예술인권익지원팀장 이선희	연락처	8008-4750
		담당자	행정 6 급 김은혜		8008-466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 사업목적

-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및 예술활동 장려·지원으로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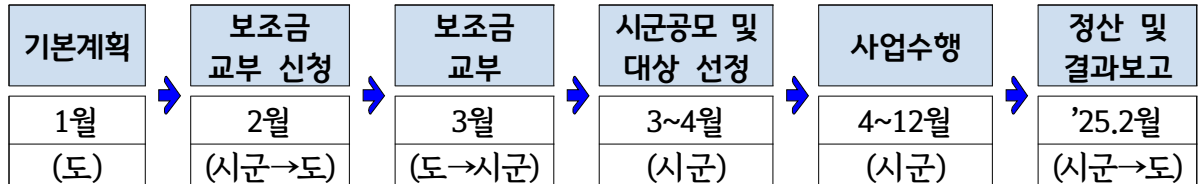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내용: 4개 분야 지원
 -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 단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공연, 전시, 행사 기획사업 지원
 -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등 창작 지원
 -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창작 및 발표사업 지원,, 장애인 관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향유 사업 지원
 - (문화예술 인력역량 강화) 장애인 전문예술가 및 문화예술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자치단체경상보조) ※ 22개 시군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예산액 : 1,288,667천원(도비 386,600천원, 시군비 902,067천원)

○ (사업대상)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예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선정·지원 단체(개인) 수 (사업량)	88개 사업	90개 사업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1,133,333	(도비)340,000 ※ 시군비 파악 불가	1,288,667	

2-3-2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일반 기회
-------	------------------	--	----------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예술인권익지원팀	팀장	예술인권익지원팀장 이선희	연락처	8008-4750
		담당자	행정 6 급 김은혜		8008-466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 사업목적

- 장애(예술)인의 전문예술 교육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를 마련하고 실력있는 예술가 발굴·육성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초-심화 단계별 전문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선정자(단체) 대상 역량강화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1:1멘토링 지원
- '24년 개선사항
 - '23년 모니터링 결과 교육/활동 지원 운영방식에 차별점이 크지 않고 단체별 역량 차이가 크게 확인됨에 따라 공모과정에서 기초/심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단 체		개 인
과 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총 지원예산	230백만원	340백만원	75백만원
지원규모	단체별 10~30백만원	단체별 20~40백만원	개인별 3백만원(정액)
선정규모	12건 내외	12건 내외	25명 내외
지원내용	교육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대여, 참가자 모집, 강사 인건비, 훈련사업비 등 지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예술인의 전문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경기문화재단)
- (추진절차) 위수탁협약체결('24.1월) → 사업비 교부 및 운영 관리('24.2월~12월) → 정산('25.1~2월)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예 산 액 : 800,000천원(전액도비)
 - 단체 24, 개인 25 내외
 - ※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사업대상)
 - 장애예술단체(단체 소속 구성원 및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이상인 예술단체)
 - 장애예술인
- (추진일정)

공 모	접 수	심 사 (1차·2차)	선 정	지 원	모니터링 및 정산
신청공고	신청접수	5인이상 관계 전문가	결과발표	사업비교부 및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24.3월 말	'24.4월1주	'24.4월 중	'24.4월 중	'24.4월 말	~'25.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사업 선정·지원 단체(개인) 수	52개 단체(개인)	49개 단체(개인)	운영방식 개선으로 지원 단가 상향에 따른 목표 조정 (20~30백만원→20~40백만원)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700,000	700,000	800,000	

2-4-1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일반
-------	-----------------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지역상생관광팀	팀장	지역상생관광팀장 윤미란	연락처	8008-8541
		담당자	행정7급 백재연		8008-332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업)

□ 사업목적

-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 실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시·군 관광지 환경 개선 추진 * 보행로 및 편의시설 개선 분야
 - (활성화 및 정보제공)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
 - (경기여행누림)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 운영(휠체어 탑승가능 대형버스 2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공기관(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1,602백만원(공간환경개선1,002(도비30%,시군비70%), 경기여행누리300(도비), 활성화 정보제공300(도비))

○ (사업대상)

- 관광배려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 (추진일정)

- 경기관광공사/경기복지재단 위수탁계약 체결('24.2월)
- 5개 시군 관광지(6개소) 보행로 정비 등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추진 등('24.2월~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경기여행누리 이용자(명)	경기여행누리차량 이용객(명)	4,105명	4,120명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단위 : 천원/ '24. 2. 29.기준)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2,245,000	1,906,136	1,602,00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1,645,000	1,306,136	1,002,000	개사문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경기여행누리)	300,000	300,000	300,00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무장애관광 활성화정보제공)	300,000	300,000	300,000	

3-1-1.2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중점
---------	-----------------	----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팀장	교통복지팀장	윤종혁	연락처	8030-3731
		담당자	행정7급	홍예원		8030-390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사업목적

-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기도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량: 특별교통수단 184대 도입 지원/특별교통수단 1,250대 운영
- 사업시행방법: 시·군 대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해당 시군
- (추진절차) 보조금 내시('23.12월) ➡ 자금교부('24.2월) ➡ 추진상황 점검(상시) ➡ 결산('25.2월)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특별교통수단 184대 도입 지원
 - ※ 국비 지원사업 100대, 도비 지원사업 84대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광역이동 시군 정액보조 30%

○ (사업대상) 해당 시군 대행

○ (추진일정)

- 보조금 내시: '23.12월
- 자금교부: '24.2월
- 추진상황 점검(상시)
- 결산: '25.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특별교통수단 확보 대수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1,209	1,250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34,670,897	34,488,286	44,577,466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자체/지원)	1,401,600	1,401,600	2,198,800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자체/지원)	33,269,297	33,086,686	42,378,666	

3-1-3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중점 공약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팀장 담당자	교통복지팀장 방송통신6급	윤종혁 신인식	연락처
			8030-3731 8030-3732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사업목적

- 교통약자에게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4. 1월 ~ '26. 12월
- 위탁기관 : 경기교통공사
- 사업내용 : 시스템 관리 및 시·군 센터 협의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교통공사
- (추진절차) 자금교부('24.1월) ➡ 추진상황 점검(상시) ➡ 결산('25.2월)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대상)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 (추진일정)
 - 자금교부: '24.2월
 - 통합배차 실시 : '24.7월~
 - 결산: '25.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도-시군 시스템 연계 운영	30개 시·군	31개 시·군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1,777,251	1,777,251	5,190,13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6급 주희연		8008-433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예방

□ 사업개요

- (대상) 도내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교육·홍보
- (수행)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남부1, 북부1)
- (인력) 총 25명(남부 14명, 북부 11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민간위탁
 - 남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북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추진절차) 사업계획 검토 →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 → 실적보고 및 정산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남부1, 북부1) 운영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 (추진일정)
 - '24. 1월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검토(道)
 - '24. 1월 ~ 12월 : 분기별 예산교부(道) 및 사업시행(옹호기관)
 - ~'25. 2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옹호기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건수	상담·지원건수 (학대예방시스템)	7,972건	8,000건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613,360	1,613,360	1,849,589	

3-2-2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 및 파견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팀장	장애인일자리팀장 이태운	연락처	8008-5145
		담당자	행정 7급 이규효		8008-5151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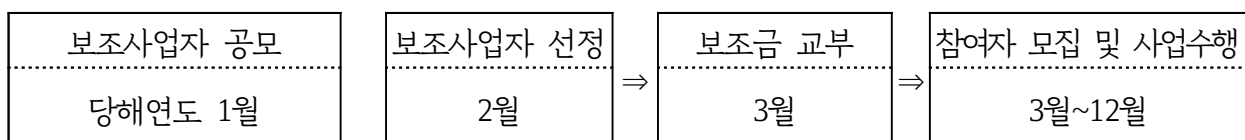
- 장애인의 특화직종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대상) 도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내용) 전문 이론 교육 및 현장훈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 (수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사업량) 강사양성 20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강사양성 20명
- (사업대상) 道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4. 1월
 - 보조사업자 선정 : '24. 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4. 3월 ~ 12월
 - 사업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 (수행기관→도) : '25. 1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강사양성	심한장애인 미 구분	19명	2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도비	252,780	252,780	252,78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7급 임지윤		8008-435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 사업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권리 주체로서 인식을 고취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론교육, 체험교육, 인형극, 연주단), 캠페인, 장애 인식개선 강사단 운영
- (사업대상) 도민(초·중·고 학생, 지역주민 등), 공무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사)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식개선팀
- (추진절차) (도) 도비 시·군 자금교부(분기별) → (수행기관)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

- 도민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 인식개선 교육 수행(이론교육, 체험교육, 골든벨, 인형극, 연주단 등) 및 캠페인 활동

○ (사업대상)

- 도민(초·중·고 학생, 지역주민 등), 공무원

○ (추진일정)

- 연중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횟수)	장애 인식개선 교육(횟수)	391회	421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184,000	184,000	209,000	

3-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사회복지 7급 김은지		8008-431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장애인을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으로 채용,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 편의시설 자료 확보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도모
 -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에 대한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DB자료 확보

□ 사업개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적합성 승인 건축물 및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시설을 조사하여 편의시설 자료 확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31개 시·군
- (추진절차) 시·군별 채용된 조사요원이 11개월 동안 직접 방문하여 시설조사 및 스마트앱 DB입력 관리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31개 시·군의 조사요원 43명 활동

○ (사업대상)

-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

○ (추진일정)

- 관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지원

※ 시·군별 조사요원 채용 및 조사요원 활동 및 인력 관리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현장조사요원 조사활동 인원	현장조사요원 조사활동 인원	42명	43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1,228,666	1,015,039	1,277,67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사회복지 7급 김은지		8008-431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상담, 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
 - 건축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 업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상담, 홍보·교육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 시·군 31개소)
- (추진절차) 센터 별 3인 이상(센터장, 선임요원, 일반요원)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
 - ※ 일반요원 중 기술요원은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채용(보건복지부 운영 지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 시·군 31개소)
- (사업대상)
 - 도 및 31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지부
- (추진일정)
 - 관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도 및 시·군 편의센터 운영	센터 운영 개소 수	32	32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2,951,504	2,891,714	3,226,600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452,904	452,092	498,600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2,498,600	2,439,622	2,728,000	

3-3-3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	팀장	정보문화팀장	곽장미	연락처	8008-2910
		담당자	행정 7 급	김수영		8008-291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조 및 제50조
- 경기도 정보취약 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장애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민간 교육기관(경기도에서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교육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교육기관 협약체결 → 교육실시 → 교육종료 및 정산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교육기간 : 2024. 4월 ~ 12월
- 교육목표 : 연 2,268명 교육(기관당 252명)
- 사업방식 : 도내 교육기관에 보조금 교부(민간경상보조)
- 교육기관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9개 기관
- 교육내용 : PC와 모바일 등 활용방법을 초·중·고급으로 나누어 교육
- 교육운영 : 교육기관에서 강사선발, 수강생모집 및 강의 실시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안내, 신청서류 마감 : '24. 1월
-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24. 1월 ~ 2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예산담당관) : '24. 2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4. 3월
- 교육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4. 3월
- 교육 실시 : '24. 4월 ~ 1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디지털복지향상	교육기관목표인원 : 기관당 252명	5,583명	2,268명 (252명×9개기관)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402,070	344,076	190,228	

4-1-1	장애인 기회소득	중점
		기회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사회복지6급	심은희		8008-4486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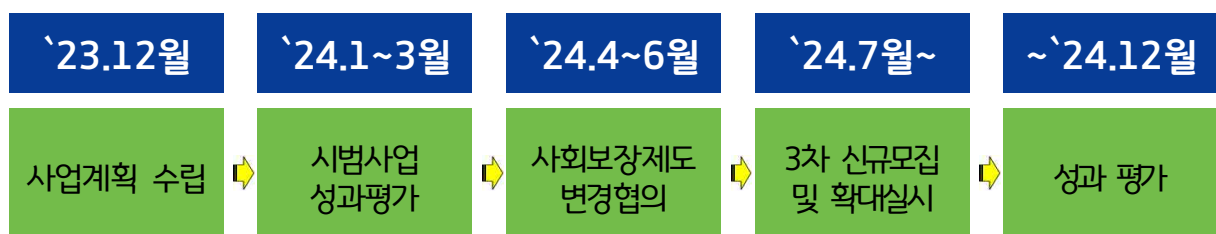
-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자기선택권 보장 등 더 많은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총사업비) 10,000,000천원(도비 100%)
- (대상) 道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0명 ※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약114천명)
※ '23년 사업량 : 7,000명 + '24년 신규 3천명 추가(향후 기준 적합자로 확대)
- (내용) 장애인의 사회적가치활동 보상으로 장애인기회소득 지원
-('23년) 월 5만원(6월 30만원) → (확대) 월 10만원(현금, 연 최대 120만원)

□ 추진체계

- (수행기관) (재)경기복지재단 *공기관 대행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道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사업대상) 道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0명
- (추진일정) 월 10만원 현금지급(연 최대 120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수	활동 성과(완수율)	70%	70%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2,300,000	1,929,100	10,000,000	

4-1-2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사회복지6급 장미애		8008-4325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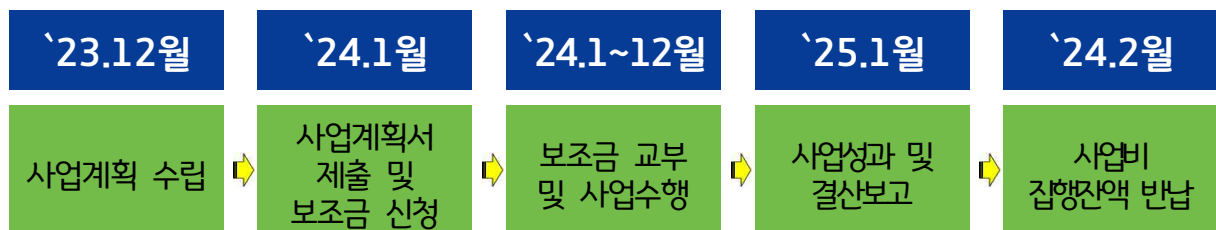
-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로 단체 활성화

□ 사업개요

- 23개 단체의 ‘행사 및 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체
 - (행사 추진)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합창대회, 수어경연대회,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축제한마당 등
 -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단체 역량강화 사업,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등

□ 추진체계

- (수행기관) 道 소속 16개 장애인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道 소속 16개 장애인단체
- (사업대상) 16개 장애인단체 추진 45개 행사 및 복지사업
- (추진일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후 연중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지원단체 수	23	23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5,988,324	5,988,324	7,700,844	

4-2-1	자립전환지원단 조직 설치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사회복지6급 조민희		8008-5144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0조(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구성·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여건 조성
 - 장애인자립욕구조사를 통한 자립전환상담 제공으로 지역사회 자립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로 장애인 자립 절차 도식화 및 표준매뉴얼 개발
- 자립관련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및 표준 매뉴얼 배포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개요

- 대행기관: (재)경기복지재단 / 전담인력 4명(팀장1, 팀원3)
- 주요사업: 누림하우스 시범운영, 장애인자립전담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지원 등

※ 업무대행 계약기간: '24. 1. 1. ~ '26. 12. 31. (3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 (추진절차)

경기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반기별)



자립전환지원단
누림하우스 설치·운영 및 자립전환사업 지침 개정 등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누림하우스 3채 운영 및 시군 체험홈 운영지원, 자립전환 네트워크 구축
- (사업대상) 도내 자립희망 장애인
- (추진일정) 반기별 보조금 교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자립전환지원단 조직 설치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0조	1개소	1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305,000	305,000	321,000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사회복지6급 조민희		8008-5144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9조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 운영비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1년 이상 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내용) 개인별 자립지원, 동료상담, 자립정보제공 및 의뢰 등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1년 이상 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추진절차)
 - (IL센터)공모신청 → (시·군)지원대상 추천 → (도)최종심사·지원결정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62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 (추진일정)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분기별
 -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파악 : 분기별
 - '23년 자립생활센터 지원 정산확정 및 반납고지 : 5월
 - 본예산 수요파악 : 8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수	60개소	62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12,662,800	12,662,800	13,305,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2,400,000	12,400,000	13,020,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62,800	262,800	285,000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행정6급 민현주		8008-514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6조(자립생활체험홈)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으로 자립역량 강화

* 대중교통 이용하기, 은행이용, 시장보기, 금전관리, 이웃사귀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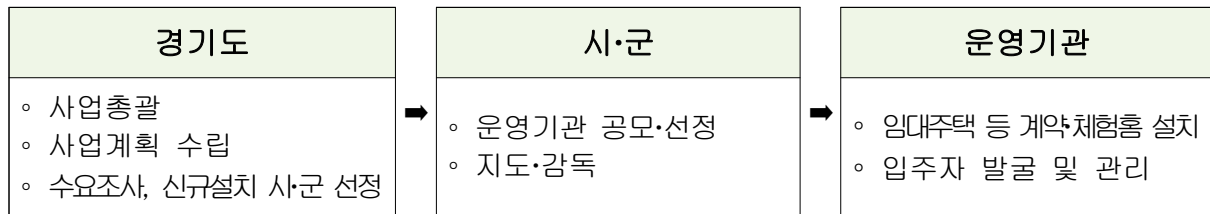
○ 운영기준

-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입주기간) 2년(시·군 승인으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1채당 정원 2명, 1인 1실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25개 시·군 운영 80채, 신규설치 3개 시·군 5채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추진일정)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반기별
 - '23년 자립생활체험홈 설치·운영 정산 및 반납고지 : 2월
 - 자립생활체험홈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 : 분기별
 - '25년 시·군별 사업 수요 파악 예산 요구 : 8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자립생활체험홈 설치·운영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수	78채	80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4,110,000	3,194,551	4,100,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지원	3,510,000	3,006,959	3,600,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지원	600,000	187,592	500,000	

4-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중점
공약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행정6급 민현주		8008-514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3조(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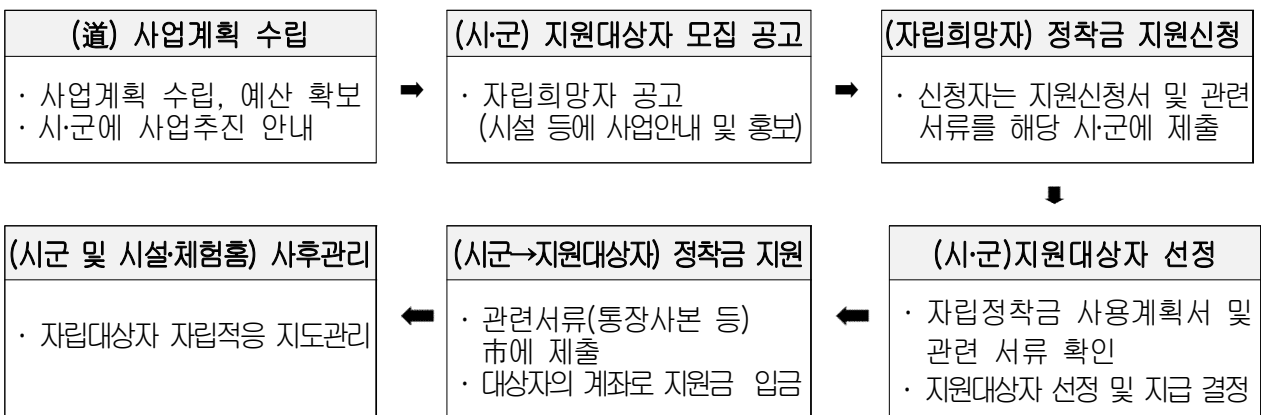
-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 경비 지원
 - 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장·군수
- (추진절차)



※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21개 69명
- (사업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 (추진일정)
 - '23년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정산 및 반납고지 : 2월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반기별
 - 자립생활정착금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 : 분기별
 - '25년 시군별 사업 수요 파악 예산 요구 : 8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정착금 지원자 수	39명	69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765,000	585,000	1,380,000	

4-2-5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일반 공약+기회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행정6급 민현주		8008-514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7조(자립생활주택)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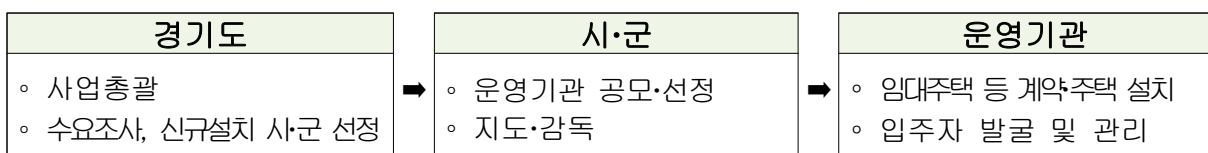
-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서비스(일자리, 의료, 일상생활 등 지역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 운영기준
 -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입주기간) 2년(시·군 승인으로 1년 단위 연장, 기간 제한 없음)
 - 1채당 정원 2명, 1인 1실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6개 시군 16채 운영, 신규설치 2채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추진일정)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반기별
 - '23년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정산 및 반납고지 : 2월
 - 자립생활주택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 : 분기별
 - '25년 시군별 사업 수요 파악 예산 요구 : 8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 수	14채	16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668,200	482,870	726,800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590,800	411,481	675,200	
자립생활주택 설치지원	77,400	71,389	51,600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정애	연락처	8008-5141
		담당자	행정6급 민현주		8008-514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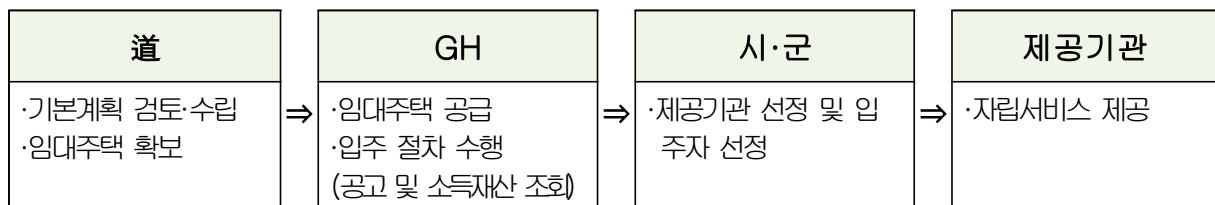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서비스 제공
 - 주거 : 임대주택(LH, GH) 제공
 - 자립 서비스 : 일자리, 의료, 일상생활 등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군,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0개 시군 72호 운영 지원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추진일정)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반기별
 - 자립주택 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 : 분기별
 - '25년 시군별 사업 수요 파악 예산 요구 : 8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자립주택 운영 수	-	72호	'24년 신규사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	-	3,717,174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균특/지원)	-	-	1,604,574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자체/지원)	-	-	2,112,600	도, 시 군 추가지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임세윤	연락처	8008-4436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8008-4437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및 제81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대상 : 6세 ~ 64세까지의 모든 장애인 중 활동지원 국비 수급자
- 지원시간 : 월5시간 ~ 137시간

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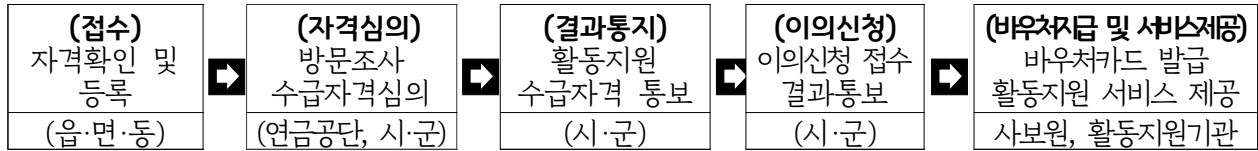
- 대상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 호흡기 착용 장애인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장애인
- 지원시간 : 330시간/월 지원
 - ※ 국비 급여+도추가+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월 최대 840시간까지 지원

③ 시군 장애인 맞춤형지원사(도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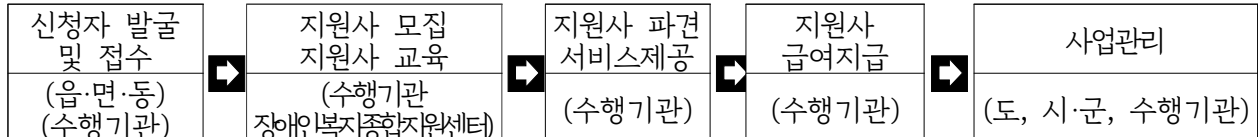
구분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대상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 록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비수급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시간	월 48시간 이내	월 160시간 이내	월 80시간 이내
지원내용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등	육아 위생관리, 건강관리, 가사활동 등

□ 추진체계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사업대상) 6세 ~ 64세까지의 모든 장애인 (소득무관)

※ 국비 급여에 경기도에서 추가 활동지원시간 제공

○ (사업량) 17,274명

○ (사업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월5시간 ~ 137시간

○ (추진일정)

- (도) 보조금 교부 (분기별) → (시군) 사회보장정보원 예약금 예약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결제, 결제 승인, 활동지원기관별 급여지급, 정산 (매월)

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 (사업대상)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 호흡기 착용 장애인

- 독거·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 외상·사지마비 장애인

○ (지원시간) 330시간/월 지원

※ 국비 급여+도추가+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월 최대 840시간까지 지원

○ (추진일정)

- (도) 보조금 교부 (분기별) → (시군) 사회보장정보원 예약금 예약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결제, 결제 승인, 활동지원기관별 급여지급, 정산 (매월)

③ 시군 장애인 맞춤형지원사(도우미) 운영

구분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대상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시간	월 48시간 이내	월 160시간 이내	월 80시간 이내
지원내용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등	육아 위생관리, 건강관리, 가사활동 등

○ (추진일정)

- (도) 보조금 교부 (분기별) → (시군/수행기관) 대상자발굴, 서비스지원(매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제공 실적	17,011명	17,274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제공 실적	253명	295명	
시군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도우미) 운영	시군 수요조사	437명	389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76,079,016	76,079,016	91,421,07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59,560,865	59,560,865	70,326,84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12,885,231	12,885,231	17,461,231	
시군 장애인 맞춤형지원사(도우미) 운영	3,632,920	3,632,920	3,633,000	

5-1-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일반
-------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	팀장	노인건강팀장	김은미	연락처	8030-3261
		담당자	간호 7급	김재완		8030-326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
 - 장애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건강격차 심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포함)
- 사업량 : 2개소(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 의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이용에 편리한 시설과 검진장비를 구비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성 및 수검률 향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 지정기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 의료원)
- (추진절차) 수검자가 장애친화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검진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편의시설 등 제공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2개소 운영(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 의료원)
- (사업대상) 도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포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 이용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로 1인당 62,920원의 검진가산비용 추가 지원
- (추진일정) 연중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1개소 운영	2개소 운영	-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117,000	117,000	0	비예산

※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라 사업 지정 1차년도에 한해 시설·장비비 지원

5-1-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일반
-------	--------------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사업팀	팀장	공공의료사업 팀장 정재영	연락처	8008-4630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홍정인		8008-4782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제2항, 제4항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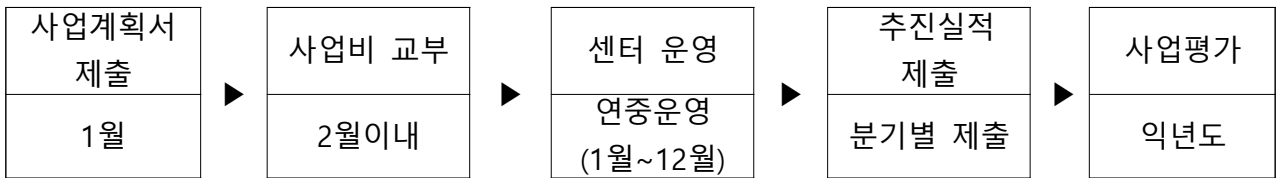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함.

□ 사업개요

-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자
- (내용) 고난이도의 장애인 치과진료 및 센터 진료비 지원
- (수행) 2개소
 -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 죽전치과병원). 2012.5월개소
 - 경기북부장래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2022.12월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예산지원
 - 경기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예산지원, 추진실적 보고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구강진료 및 진료비 지원 등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 운영
 -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죽전치과병원)
 - 경기북부장래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 (추진일정) : 2024년 1월~12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 운영
 - ※ (1월) 사업계획서 제출 ▶ (2월) 사업비 교부 ▶ (분기별)추진실적 제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비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지정	2개소	2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915,200	915,200	878,200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	팀장	의약관리팀장	원주혜	연락처	8008-4370
		담당자	보건 6급	박예원		8008-4347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과 재활치료)

□ 사업목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통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도 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타지역 유출 예방 및 민간제공이 어려운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 (주요내용)
 - 전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재활의학과, 발달지연클리닉 등)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생애주기별 관리, 교육·복지제도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개소)
- (추진절차) 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국립중앙의료원 평가심의 및 결과 통보 → 예산교부 →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 제출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개소 ※ 보건복지부 평가 후 지정기간 연장(~2025년)
 -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 (사업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추진일정)
 - 예산 교부 및 사업 수행
 - 분기별 사업수행상황 보고(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보건복지부 공문	1	1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1,281,180	1,219,657	1,237,500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기금/직접)	343,680	282,157	300,000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건비 지원 (기금/직접)	937,500	937,500	937,500	

담당부서	생활안전담당관 생활안전팀	팀장	생활안전팀장	최문석	연락처	231-0381
		담당자	소방위	민예홍		231-0383
	생활안전담당관 안전교육팀	팀장	안전교육팀장	유지영	연락처	231-0360
		담당자	소방위	이남형		231-0362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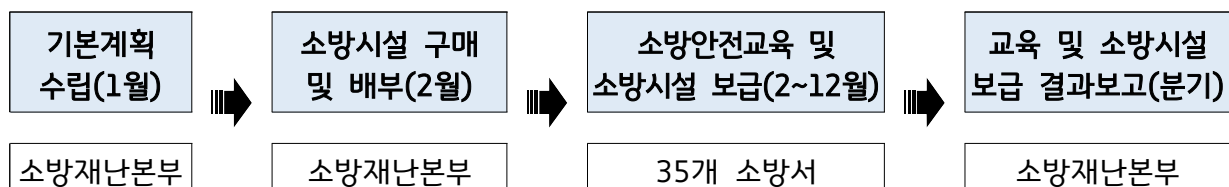
- 화재 등 재난 시 초기대응 및 대피로 장애인 인명피해 저감 도모
- 장애인 관련 시설 등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등 제외) 거주 신규 등록 장애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장애유형을 고려한 소화기·화재경보기 지원(청각장애인용 경보기 교체(보급))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추진
 - 장애인 전담강사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등 거점시설 연계한 적극적 교육대상 발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추진
 - 장애유형을 고려한 소화기·화재경보기 지원(청각장애인용 경보기 교체(보급))
 - (1순위) 청각 장애인 가구, (2순위) 청각 장애인 외 신규 장애인 등록자 보급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추진
 - 경기도 등록 장애인 인구수 대비 6.0%(35,185명) 소방안전교육 추진
 - ※ 경기도 등록 장애인(23.12월 기준) : 586,421명
- (추진일정)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및 소방안전교육
 - (24.2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및 배부
 - (24.3월~12월)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교체(보급)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1순위)청각장애인 가구 대비 산출, (2순위) 그 외 유형의 신규 장애인 등록자 보급	-	500가구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	장애인인구수 대비 교육인원 산출	5.8%	6.0%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4.1.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비예산		30,000	
장애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비예산		30,000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	비예산		비예산	

5-2-1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팀장	보육지원팀장 양경화	연락처	8008-2571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현정		8008-257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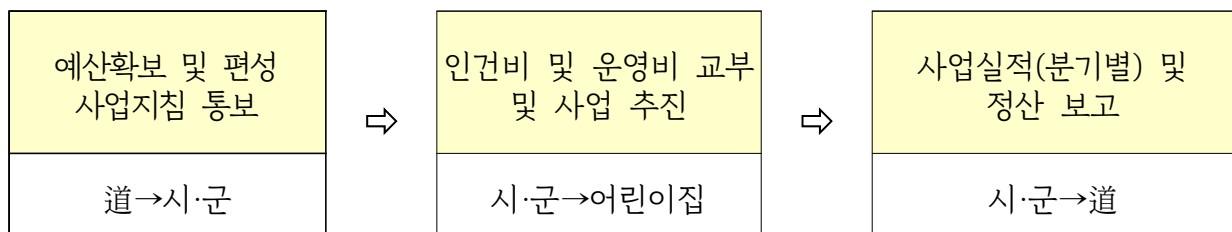
-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운전기사 인건비 : (전문) 월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시
 - 교재·교구비 : (전문) 연400만원, (통합) 연200만원 ※ 장애반 3개 이상 운영 시

□ 추진체계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607,400천원(도비 162,400, 시군비 445,000)
- (사업대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운전기사 인건비 : (전문) 월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시
 - 교재·교구비 : (전문) 연400만원, (통합) 연200만원 ※ 장애반 3개 이상 운영 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개소(명)	시·군 수요조사	교재·교구비 : 21개소 운전기사 : 17명	교재·교구비 : 128개소 운전기사 : 17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348,000	314,019	607,400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아동돌봄팀	팀장	아동돌봄팀장	한수경	연락처	8008-3050
		담당자	행정 7급	고홍훈		8008-475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지적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적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지적장애아동 등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장애아동 전문인력 1명 지원, 프로그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 추진체계

-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사업 총괄 등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업 적정 수행 여부 관리감독
-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통합 전문인력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량: 29개소
- 사업대상: 지적장애아동 등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 추진일정
 - '24. 1월: 기본계획 수립, 장애통합 전문인력 채용
 - '24. 1월 ~ 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5. 1월: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	29개소	29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1,254,788	1,254,788	1,159,800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팀장	보육정책팀장	김남수	연락처	8008-2370
		담당자	행정 7급	김영빈		8008-256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영유아) 장애위험 조기발견 및 지원연계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부모·보육교직원)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도내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 중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여 장애로 발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 지원내용: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선별 및 치료연계, 보육교직원·부모 교육 및 상담

□ 추진체계

-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사업 총괄 등
-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가이드북 배포 등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업 적정 수행 여부 관리감독
-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선별 및 치료연계, 교육 상담 등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량: 발달지원 상담원 32명
- 사업대상: 도내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 추진일정: 연중 발달지원 상담(치료 연계 포함) 및 교육·상담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발달지원상담원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원(수)	31명	32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배치	812,634	812,634	859,20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7급 임지윤		8008-435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사업목적

-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을 통한 경기도 내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
 - (근거)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 5. 19. 시행)
 - (내용) 고령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도내 60세 이상 장애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17개 시·군
- (추진절차) (도) 도비 시·군 자금교부(분기별) → (시군)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고령장애인 쉼터 17개소 운영 지원

※ 용인, 부천, 평택, 안성, 하남, 의왕, 남양주, 오산, 고양, 화성, 안산,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과천, 파주, 구리, 연천

○ (이용대상)

- 도내 만6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추진일정)

- 연중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건강, 사회참여, 안전 및 권리) 제공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개소)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개소)	17개소	17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1,260,000	1,260,000	1,260,000	

5-2-5	농아노인센터 운영	중점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행정6급	이상헌		8008-4485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목적

- 장애와 노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아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6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
- 내 용 : 비장애 노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청각·언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급식, 문화체험, 한글교실 등 운영
 - (복지후생) 균형있는 무료급식 제공, 고독해소를 위한 절기행사
 - (재활문화) 건강체크, 문화체험
 - (교육문화) 공예교실, 댄스교실, 미술교실 등
- 방 법 : 경기도농아인협회를 통한 농아노인센터 2개소 운영(남부/북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농아인협회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보조금 신청(단체) → 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지원(도) → 사업수행(단체) →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점검(도)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농아노인센터 2개소(남부/북부)
- (사업대상) 도내 6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
 - (복지후생) 균형있는 무료급식 제공, 고독해소를 위한 절기행사
 - (재활문화) 건강체크, 문화체험
 - (교육문화) 공예교실, 댄스교실, 미술교실 등
-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보조금 신청(단체) → 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지원(도) → 사업수행(단체) →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점검(도)
 - ('23.12월)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편성 : 도
 - (분 기 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도
 - (상 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제공 : 지원대상 ↔ 단체
 - ('25.2월) 보조금 정산 : 도 ↔ 단체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농아노인센터 운영	단체 사업계획	2개소	2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농아노인센터 운영	640,124	640,039	711,772	

5-3-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7급 임지윤		8008-435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대상) 도내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내용)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31개 시·군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계획 및 지침 수립 → (도) 국도비 시·군 자금교부(분기별) →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 결정 및 지급 → (도) 실적 취합 및 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출산한 여성장애인 221명

○ (사업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추진일정)

- 연중 지급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명)	226명	221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57,000	257,000	265,200	

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일반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훈조	연락처	8008-4317
		담당자	행정7급 임지윤		8008-435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대상) 도내 여성장애인
 - (내용) 여성장애인 상담, 역량강화 교육,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2개소
 -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경기남부) , 여성과장애인권익성장센터(경기북부)
- (추진절차) (도) 도비 시·군 자금교부(분기별) → (수행기관)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2개소 운영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추진일정)
 -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개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개소)	교육지원기관 운영 2개소	교육지원기관 운영 2개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05,804	205,804	230,197	

5-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임세운	연락처	8008-4436
		담당자	보건6급 유성범		8008-4335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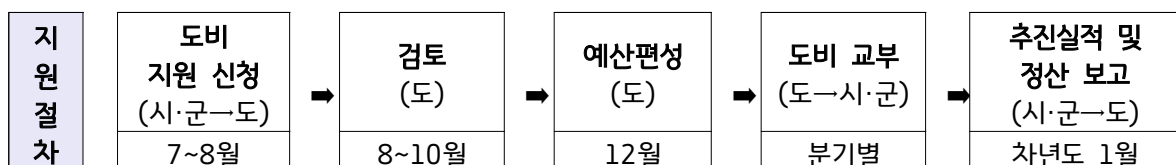
-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장애인 및 가족
- 2024년 사업량: 20개소 (도 2, 시군 18)
- 사업내용: 가족상담, 사례관리, 인식개선 교육, 휴식지원, 정보제공 등
- 예산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향후계획: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점진적 확대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민간위탁 2개소), 16개 시군(16개소)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개소(남부 12, 북부 8)

- 도 센터 2개소(남부 1, 북부 1)

센터명		수탁기관	종사자수
남부 (수원)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22.1.1.~24.12.31.)	7명 (센터장 1, 직원 6)
북부 (양주)	경기북부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23.1.1.~25.12.31.)	9명 (센터장 1, 직원 8)

- 시군 센터 18개소(남부 11, 북부 7) ※ 2024년 신규지원 2개소(하남시, 남양주시)

권역	소재지
남부(11)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하남시
북부(7)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남양주시

○ 사업대상: 장애인 및 가족

○ 향후계획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시군(13개) 설치 독려(전체 시군 설치 목표)

※ 설치 예정: ('24년) 군포, 안양, ('25년) 부천, 광주, ('26년) 용인, 안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평가 실시(1년이상 운영한 센터 18개소)

※ '24~'25년 시범평가 → 2026년부터 본평가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적 확충 수	18개소	20개소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4,159,070	4,135,539	4,804,4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887,400	882,821	1,082,400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3,271,670	3,252,718	3,722,000	

5-3-4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행정6급 조재형		8008-4364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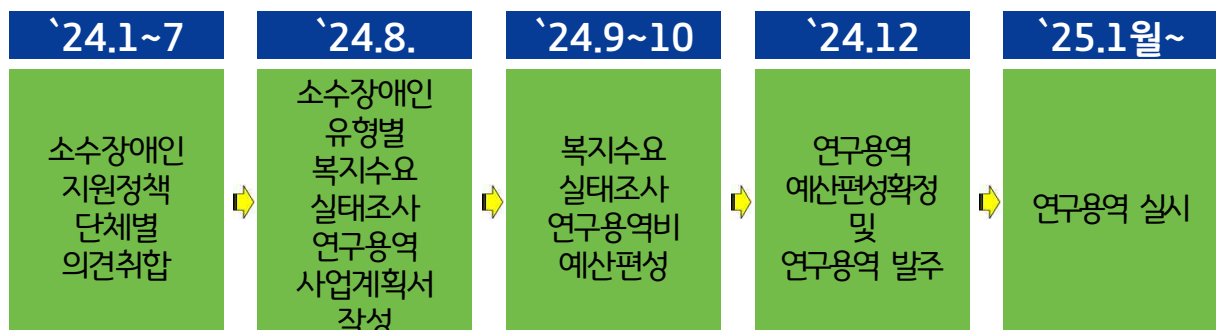
- 소수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소수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시·청각 중복장애 등 소수장애인
- 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소수장애인 72,073명('23.09월 기준)
- 사업내용 : 소수장애 유형별 단체 의견수렴 후 연구용역 실시결과 반영
신규사업 연차별 사업추진
- 예산지원: 연구용역비, 소수장애인 지원 신규사업(물품지원, 사업운영비 등)

□ 추진체계

- (추진대상)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소수장애인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소수장애인 유형별 복지수요 실태파악
- (사업대상)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소수장애인단체
- (추진일정) 각 소수장애 유형 단체별 복지수요 의견 취합 후 연구용역
사업비 편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소수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기초자료 수집	소수장애 유형별 복지수요 취합 단체수	-	7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소수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비	예	산	

6-1-1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행정6급 장미애		8008-4325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39조

□ 사업목적

- 경기 남북부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 누림센터 운영

□ 사업(건립)개요

- (사업기간) '17. 5월 ~ '23. 6월
- (사업위치) 양주시 삼송동 640-18번지 일원
- (사업규모) 부지 3,300㎡, 연면적 6,520㎡(지하 1, 지상 3)
- (입주시설) 이전설치 4, 기타 5(참고1)
 -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보조기기북부센터 /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경기북부점자도서관, 식생활 체험관 등
- (총사업비) 201억원(공사 167, 토지 9, 설계 6, 감리 19 등)

세부 추진 내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 추진체계

- (추진대상) 경기북부 소재 시·군 장애인
- (추진내용)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북부장래인복지종합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사업대상) 경기북부 소재 시·군 장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북부 누림센터 운영 활성화	북부누림 센터 운영	1	1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436,000	436,000	450,000	

6-1-2	장애인 365쉼터 운영	일반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팀장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연락처	8008-4322
		담당자	행정9급 박현규		8008-2431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사업목적

- 유희공간이 있는 거주시설(단기)을 장애인 365쉼터로 지정·운영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 재가 장애인 일시보호 제공

□ 사업개요

- 장애인 365쉼터 설치
 - 장애인 365쉼터 수요파악 신청 시·군(시·군비 부담) 우선 지정 확대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인건비(장애인 4명당 인력 2명 지원) 및 운영비 지원
- 이 용 료: 1일 2만원 (선납 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실비수준 감면 가능
- 정 원: 4명 (일반입소 2명 / 긴급입소 2명)
 - ※ 일반입소 정원은 2명 초과 불가, 긴급입소 최대 4명까지 가능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주 7일) / 입소기간 : 최대 30일 이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장애인 365쉼터 운영중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추진절차)
 - (도) 수요조사 → (시·군) 자원시설 제출 → (도) 시설 확정 → (도, 시·군) 보조금 지원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14개소 (남부 9개소 / 북부 5개소)
 -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사업대상) 해당 시군 대행
- (추진일정)
 - '24년 추가 및 '25년 신규 장애인 365쉼터 수요파악 : '24.7월
 - 집행실적 점검 및 시·군간 예산조정 : '24.5월
 - 결산 : '25.2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개소수	장애인 365쉼터 운영 시설 개소수	14	14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1,270,500	954,371	1,325,920	

6-1-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중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임세윤	연락처	8008-4436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구현		8008-4466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81조(비용 보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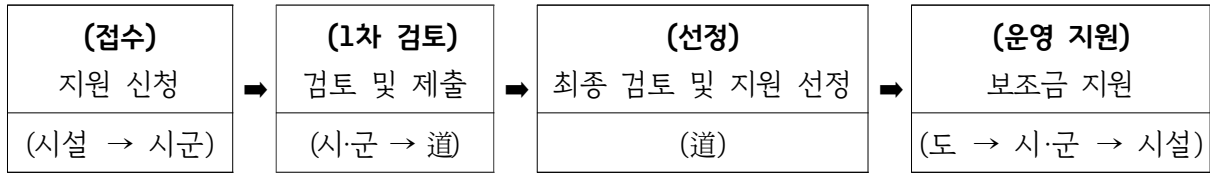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장비지원

□ 사업개요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 지원(추가 인건비, 환경개선비 초기 1회)
 - (사업내용) 일상생활,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실습생교육지도 및 추가종사자를 통한 ‘중증장애인 전담반’ 구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돌봄 비율로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 실시

□ 추진체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

- (보조사업자)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 (도, 복지부) 지원 대상 선정 및 국비내시 통보 → (복지부, 도)예산편성 →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신청 → (복지부, 도)자금교부 → (보조사업자)사업추진 → (보조사업자, 도)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②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

○ 사업량 : 154개소(남부 123개소, 북부 31개소)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중증 전담반 23개소 포함

○ 총사업비 : 72,711,963천원

- (도비) 7,271,204천원, (시군비) 64,990,759천원

○ 사업대상

- 적법하게 설치·신고된 주간이용시설 및 기존 시설운영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이용 주간이용시설

○ 추진일정 : 2024년 단년도 계속 사업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

○ 사업량 : 10개소(증개축 1, 개보수 6, 장비보강 3)

○ 총사업비 : 176,061천원

- (국비) 88,032천원, (도비) 61,623천원, (시군비) 26,406천원

○ 사업대상

- 도내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중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이 필요한 시설

○ 추진일정 : 2024년 단년도 계속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시설	운영 지원 개소수	150	154	

□ 예산현황 (총사업비 : 국비+도비+시군비 기재, '23.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계	67,073,136	67,073,136	72,888,024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66,310,666	66,310,666	72,711,96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762,470	762,470	176,061	

6-2-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중점
-------	-------------------------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팀장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운영목	연락처	8008-6150
		담당자	행정7급 이정은		8008-614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의3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최대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긴급돌봄센터 2개소(남·여 UNIT 각 4명)
- 사업비 : 531,536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사업주체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기간 : 2023. 5. 4. ~ 2024. 12. 31.
- 사업내용 : 7일 이내 긴급입소, 일반입소에 따른 일시보호, 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추진절차) 道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수행기관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경기도
- (사업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대상자 수	지원 대상자 수	6명	10명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389,659	389,659	531,536	

6-2-2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중점
					공약+기회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팀장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윤영묵	연락처	8008-6150
		담당자	행정7급 이정은		8008-614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사업목적

- 도전적 행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52,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주체 : 6개 시·군(안산, 광명, 의왕, 시흥, 남양주, 의정부)
- 선정방법(절차) : 시·군 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사업내용
 -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교육

□ 추진체계

- (추진주체) 6개 시·군(안산, 광명, 의왕, 시흥, 남양주, 의정부)
- (추진절차) 道 → 시·군 → 수행기관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6개 시·군
- (사업대상)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량	긍정적 행동지원 대상자	-	18명	24년 신규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최종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	-	-	1,152,000	24년 신규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사회복지6급	양정현		8008-432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사업)

□ 사업목적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량) 31개 시·군 1,419명
 - 31개 시·군 수요 반영 : 만 2세 ~ 만 64세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5% 수준
- (총사업비) 851,540천원(도비30%, 시·군비70%)
- (사업내용)
 - (대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해야 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
 - ※ 만 2세이상(25개월) ~ 만 64세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배변·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 (지원내용)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내 / 분기별 지원)

□ 추진체계

- (지원방법) 구입 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액 개인별 계좌 지급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 영수증 제출 → 계좌 입금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31개 시·군 만2세~만64세 미만 심한 뇌병변장애인
- (사업대상) 31개 시·군 뇌병변장애인 1,419명
- (추진일정)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개별계좌 보조금 현금 입금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명)	보조금 지급인원	1,915	2,050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255,560	214,711	255,560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팀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담당자	사회복지6급	양정현		8008-4329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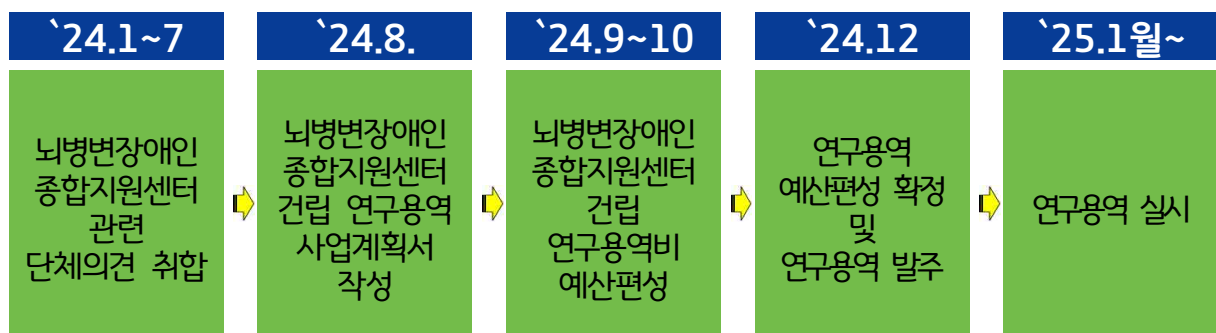
-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사업)
- (대상) 경기도 내 뇌병변장애인
- (내용)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개소

□ 추진체계

- (추진대상) 뇌병변장애인 관련 장애인단체
- (추진절차)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실태파악
- (사업대상) 뇌병변장애인 관련 장애인단체
- (추진일정) 뇌병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의견 취합 후 연구용역
사업비 편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초자료 수집	뇌병변장애인 관련 단체 위견취합 횟수	-	2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실태조사 및 의견취합	비	예	산	

6-3	장애인 ‘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중점
-----	-------------------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최현정		연락처	8008-4362
	장애인정책팀	담당자	사회복지6급 장미선			8008-4483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발달장애인지원팀장 윤영목			8008-6150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태			8008-5148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복지기본조례」제14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나 돌봄으로 돌봄공백 해소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시군·시설·가정 구별 없이 돌봄 제공

□ 사업개요

- 민선 8기 공약사항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돌봄인력 · 발달장애인 가족 등
- 방 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공기관 대행
- 사업내용

사업명	1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2 최종중 장애인 맞춤 돌봄	
		① 최종중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② 최종중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도내 장애인(가족)	• 도내 18 ~ 64세 최종중 장애인 (60명)과 그 가족 • 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 등 돌봄 전문인력 350명	• 도내 18 ~ 64세 복지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종중 장애인과 그 가족(210가구)
내 용	• 19개 시·군 장애인시설 · 단체 등 42개소 운영기관에서 3종* 서비스 제공 * ① 기관중심 돌봄형 ② 관중심 프로그램형 ③ 자조모임중심 자율형 * 수탁기관 : 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 최종중 장애인 돌봄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 지급 (15~25만원) • 최종중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 돌봄 지원 * 도전적 행동 컨설팅, 긴급돌봄 지원 등	• 가족생활수당* 지급 * (월 40만원 9개월/4월~12월) • 공통형·선택형* 서비스 제공 * (부모휴식, 시각장애인마사지, 홈케어서비스, 부모양육코칭) • 가족돌봄 수당 지급 대상 최종중 장애인 사례관리 * 복지서비스 및 시설·기관 연계 지원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지원
예 산	2,119백만 원	2,105백만원 1,175백만원 930백만원	

□ 추진체계

구분	과제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도)	운영기관 모집(1,2차) (누림센터)										
				'야간휴일' 서비스 순차 개시(19개 사군, 42개 운영기관)									
				운영기관 컨설팅(연3회) 지원 및 성과연구분석 (경기복지재단-누림센터)									
	최중증장애인 맞춤돌봄	사회보장협의(도)			전문인력 양성 및 추가수당 지급 / 맞춤돌봄 제공 및 돌봄코칭 지원(경기복지재단-누림센터)								
	최중증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추진 실무회의(도)			가족생활수당(月40만원) 지급 개시(한국장애인개발원)								

2 2024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도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가족
- (사업대상)
 - (야간·휴일) 19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42개소 이용 장애인(가족)
 -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 돌봄 전문인력 350명 양성
 - (가족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
- (추진일정) 사업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24년도 성과연구분석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산출근거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비고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	42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지원인원	-	60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인원	-	210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어디나 돌봄' 3개 세부사업	-	-	4,224,000	